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문화정보원 -

2018.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한국문화정보원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원	2
2. 예산 현황	2
3. 주요 업무	2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총 평	3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6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① 정보화 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문책)	7
② 징계 업무 부적정 등(문책)	17
③ 기술평가 회의 운영 부적정(문책)	25
④ 징계 업무 및 승진업무 부적정(문책)	28
⑤ 출장 승인 및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시정·주의·통보)	36
⑥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 계약 및 사업관리 부적정(시정·주의·통보)	40
⑦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시정·주의)	46
⑧ 제안요청서 등 사업계획 내용 사전 협의(주의)	48
⑨ 정보화사업 참여기술자 인력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52
⑩ 하도급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59
⑪ 물품관리업무 소홀(주의·통보)	68
⑫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관리 부적정(주의·통보)	98
⑬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홀(통보)	104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의 목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기관운영, 문화정보화추진 관련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는데 두었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사항과 2014년 이후 한국문화정보원이 수행한 주요 정보화 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등에 대한 의혹사항을 확인하고, 조직·인력 관리 실태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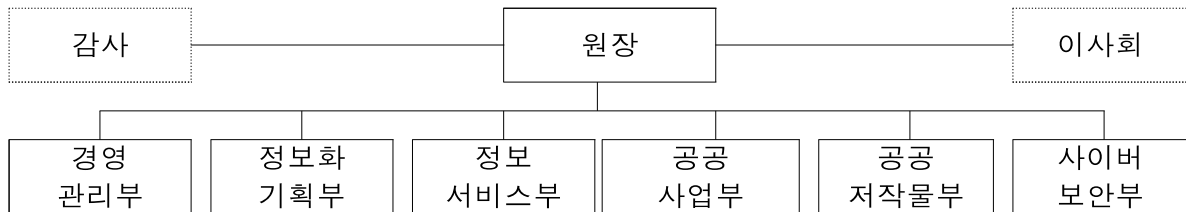
감사기간은 2017. 10. 23.부터 11. 10.까지 15일 간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 인원은 감사담당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부 전산사무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 인원의 지원을 받았다.

Ⅱ. 한국문화정보원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원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조직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 36명 중 현원은 31명이며, 그 외에 무기계약직 21명, 계약직 4명, 인턴 1명 등 57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 기구표>



2. 예산 현황

한국문화정보원의 2017년도 예산은 총 10,044백만 원이다.

(단위 : 백만 원)

내역	2016년(A)	2017년(B)	증감(B-A)	
				%
1. 국고보조금	9,251	9,209	-42	-0.5
○ 경상운영비	3,610	3,539	-71	-2.0
○ 사업비	5,640	5,670	30	0.5
2. 자체수입	802	835	33	4.1
○ IDC 수익	758	800	42	5.5
○ 문화영상제작수익 등	44	35	-9	-20.5
계	10,053	10,044	-9	-0.1

3. 주요 업무

- 문화정보화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 지원
- 주관부서, 각급 기관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업무평가 지원
- 주관부서, 각급 기관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지원 등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1. 총 평

감사결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입찰비리 등의 의혹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천 원)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일반	인사 (인원)		
건수	23	4 (5)	3 (1,667)	8	7	-	1	-

이번 감사결과 확인된 한국문화정보원의 위법·부당한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업체 선정,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등의 실태를 보면 ▲ 가격평가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기술평가 점수를 2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달라고 평가위원들에게 요구 하는 등 기술평가회의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기술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한국문화정보원이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특정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조달청에 공고, 해당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었다. ▲ 일부 용역 사업(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공고 전에 특정업체에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이행 관리와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였고, 사후정산조건부 계약임에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 ▲ 용역업체가 당초 과업내용과 다르게 인력을 감축하고 임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용역업체의 인력변경 요청을 승인하면서 실제 참여인력을 계획보다 적게 투입하였는데도 이

를 확인하지 않는 등 용역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2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5천만 원 상당의 차량(11인승 스타렉스)을 리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둘째, **인사 및 복무처리 실태**를 보면 ▲ 인턴직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입기록을 조작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관계 법령 위반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 소속 직원들이 근태를 누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한국문화정보원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지원을 위해 3개월 이상 직원을 장기 출장조치하고, 숙박비를 부당 지급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에도 경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 직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고, ▲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편법으로 특별승진 시켰으며, ▲ 일부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실태**를 보면 ▲ 재물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가구 등 물품 소재불분명, 취득물품 미등재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정보화 사업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작성과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대만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문화정보원은 보조사업 및 계약·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미준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예산 집행 부적정,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수행과 관련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기관 운영 및 직원 인사, 복무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단위 : 천 원)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 고
1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정보화 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1	
2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징계 업무 부적정 등	1	
3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기술평가 회의 운영 부적정	1	
4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징계 업무 및 승진업무 부적정	2	
5	한국문화정보원	시정·주의· 통보	출장 승인 및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150)	
6	한국문화정보원	시정·주의· 통보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 계약 및 사업관리 부적정	(624)	
7	한국문화정보원	시정·주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	(893)	
8	한국문화정보원	주의	제안요청서 등 사업계획 내용 사전 협의		
9	한국문화정보원	주의·통보	정보화사업 참여기술자 인력 관리 부적정		
10	한국문화정보원	주의·통보	하도급 관리 부적정		
11	한국문화정보원	주의·통보	물품관리업무 소홀		
12	한국문화정보원	주의·통보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관리 부적정		
13	한국문화정보원	통보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홀		
합 계		23건*		-	

* 일련번호 1번 및 8번 관련 수사요청 1건 포함

3.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별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 책 요 구

제 목 정보화 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문 책 대 상 자 ▽▽▽▽부·☆☆☆☆☆☆부 겸임부장 ★★★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서 ○○○○○부장(2014.7월~2016.1월), ▽▽▽▽부장(2013.2월~2014.6월/ 2016.2월~2017.11월 감사일 현재), ▽▽▽▽부 및 ☆☆☆☆☆ 겸임부장(2016.11월~2017.11월 감사일 현재)으로 근무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정보원에 지원한 'LOD 기반 문화융성을 위한 융합·오픈 DB 구축사업'(이하 'LOD 기반 DB 구축사업'이라 한다.),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성화 사업'(이하 '2016년 문화데이터 사업'이라 한다.), '2017년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하 '2017년 공공저작물 사업'이라 한다.) 등 문화정보 구축, 활성화 관련 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원은 회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1) 'LOD 기반 DB 구축사업' 부당 기술협상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 또는 사업발주기관이 응찰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평가한 가격 및 기술 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주관기관이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흥원은 위 'LOD 기반 DB 구축사업'(1차 사업)을 '국가 DB 구축사업'의 과제로 지정하고 정보원을 주관부서로 선정하고, 동 사업의 용역계약을 대구 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에 의뢰하였다.

진흥원으로부터 위 사업의 용역계약을 의뢰받은 조달청은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사업주관부서인 정보원은 위 사람에게 (주)●●●●●와 기술협상('15.12.29.)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발주(주관)부서와 우선협상대상자간에 실시하는 기술협상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하여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주)●●●●●와 위 사람이 실시한 기술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데이터를 수집, LOD로 DB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자체 솔루션으로 구축하겠다는 (주)●●●●●의 제안에 대해 위 사람은 아래 [표 1]과 같은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주)●●●●에 제시한 기술협상 주요내용

제안요청서('15.5.18)	기술협상안('15.12.29)
주관기관에서 현재 구축운영 중인 '통합 관리시스템' 및 '문화포털'서비스 구축 환경과 상호호환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솔루션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시스템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특허권자로부터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사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함

위 사람이 제시한 기술협상안[표 1]은 RDF데이터를 LOD데이터로 변환하고 DB화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ⅡⅡⅡⅡ 솔루션)과 연동시키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정보원에서 작성하고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요청서[표 1]에는 LOD 데이터를 통합관리시스템 및 문화포털 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시키라는 내용은 없으며, 위 요구 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ⅡⅡⅡⅡ 솔루션)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므로 동 시스템 특허권자인 (주)○○○이 직접 수행하거나, (주)○○○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의 요구는 제안요청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이나, (주)●●●●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상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위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을 기술지원 형식으로 동 사업에 참여시켰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주)●●●●가 자신들이 개발한 솔루션으로 LOD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통합관리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 방지를 위해 위 협상안을 제안한 것이며, 제안요청서의 상호 호환은 연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의 주장처럼 기능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계법령¹⁾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동 내용을 제시하고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표 1]과 같이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협상안을 제시하여 동 사업의 경쟁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주)○○○에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제안요청서의 상호 호환은 양 시스템에서 장애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LOD 기반 DB 구축사업’(2차) 사업계획서를 (주)○○○이 작성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을 추진할 경우,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 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는 입찰관련 정보에 각별한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LOD 기반 DB구축’ 1차 사업(2015년)에 기술지원 형식으로 참여한 (주)○○○에게 2차(2016년)사업계획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동 계획서 및 수정분 등을 (주)○○○ 직원 ◇◇◇으로 부터 메일(2016. 2. 1~3. 31)로 받아, 사업담당자 ◆◆◆에게 전달하여 진흥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주)○○○ 직원 ◇◇◇과 정보원 ◆◆◆는 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을 통해 공고하는 등 (주)○○○이 경쟁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은 ‘제1항 제2호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동 기준 제4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서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주)○○○ 직원 ◇◇◇이 자신에게 메일로 발송한 자료는 단순 참고자료이고, 자신은 동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담당자 ◆◆◆에게 (주)○○○으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는 위 사람이 자신에게 (주)○○○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 2016. 3. 10. 08:55분에 (주)○○○ ◇◇◇으로 부터 메일로 받은 사업계획서를 당일 17:51분에 진흥원에 제출한 점, 동 사업계획서 외 (주)○○○이 타 기관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를 위 사람이 검토해 준 것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기술평가위원회 진행 부적정

가. ‘2016년 문화데이터 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정보원은 2016. 5. 16. 위 사업의 경쟁입찰에 응찰한 (주)○○○과 (주)□□□□□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정보원 회의실에서 기술평가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기술평가위원회는 응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대상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회의로써 동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업발주기관은 엄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발주기관의 위원회의 관계자는 회의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행동이나 발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 위원들에게 가격점수 결과에 관계없이 동 위원회에서 최고의 기술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업체 간 기술 점수 차이를 2점 이상 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이 높은 기술점수를 받도록 유리한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은 위 1)에서 기술한 바대로 가격점수와 기술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경쟁 입찰 관련 규정을 피해 (주)○○○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편법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업체 간 기술점수가 차이가 나도록 평가해 달라고 한 것은 기술력 없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 관련 발언은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업체만이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위 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주)○○○이 동 사업을 모두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 위 사업 기술평가회의(2016. 5. 16.) 전 까지 정보원에서 경쟁입찰로 추진한 정보화사업(34건)에 응찰한 업체 중, 타 응찰 업체에 비해 낮은 기술점수 받았으나, 높은 가격점수를 받아 종합점수에서 앞서 사업을 수주한 경우는 1건(2014년 문화정보사이트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율 모니터링체계 운영 용역)에 불과하다.

또한 평가위원이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을 했다하더라도, 위 사람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나. ‘2017년 공공저작물 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위 사람은 위 가.의 경우처럼 위 사업 응찰자인 (주)○○○○과 (주)■■■■의 기술평가위원회(2017. 5. 25.)에 참석하여 응찰업체간 기술평가점수 차이를 2점 이상 나도록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이 높은 기술점수를 받도록 유리한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하게 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1)~3)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2. 인사 및 복무규정 위반 등 근무태만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는 직원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사람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2015. 1. 1.~2017. 9. 30.), 아래 [표 2]와 같이 지각하거나 조기퇴근 하는 등 총 19일에 걸쳐 1,765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근태 누락시간 현황(2015.1.1.~2017.9.30.)

구분	연도	비근무일자	누락시간	근태누락(분)	내용(사유 등)	비고
2017		4. 14.	14:40-18:00	200	캡스기록(조기퇴근)	2일
		5. 18.	10:20-12:00	100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계		300		
2016		3. 9.	14:10-18:00	230	캡스기록(조기퇴근)	8일
		4. 5.	17:45-18:00	15	캡스기록(조기퇴근)	
		4. 19.	17:10-18:00	50	캡스기록(조기퇴근)	

		6. 22.	09:00-11:40	160	캡스기록(늦은출근)	
		10. 12.	16:00-18:00	120	캡스기록(조기퇴근)	
		10. 31.	09:00-09:10	10	캡스기록(지각)	
		11. 3.	10:35-12:00	95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12. 22.	16:50-18:00	70	캡스기록(조기퇴근)	
		계		750		
2015		1. 5.	17:45-18:00	15	메일발송(조기퇴근)	9일
		3. 27.	09:00-10:40	100	캡스기록(늦은출근)	
		5. 13.	16:40-18:00	80	메일발송(조기퇴근)	
		6. 1.	16:25-18:00	95	캡스기록(조기퇴근)	
		6. 3.	16:30-18:00	90	내부결재(조기퇴근)	
		8. 10.	16:10-18:00	110	내부결재(조기퇴근)	
		11. 3.	16:00-18:00	120	메일발송(조기퇴근)	
		12. 29.	17:30-18:00	30	캡스기록(조기퇴근)	
		12. 30.	16:45-18:00	75	캡스기록(조기퇴근)	
		계		715		
	합계			1,765		19일

위 사람의 복무 태만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9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한다.

3. 품위유지 의무 소홀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직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으며, 「성희롱 예방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장은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을 존중하고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또는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사람은 2013년 ▽▽▽▽부 내에 △△△팀이 별도로 신설되고, 신규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부서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같은 해 7~8월경에 신규 직원들과의 1:1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 직원과는 홍대입구 전철역 주변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카페(업소명 미상)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위 사람은 ▲▲▲ 직원에게 ‘오늘은 못 들어가, 들어가는 날이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고, 동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 직원은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만약 자신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 직원과 신규 직원간의 업무분장과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했으나 회피하려는 상황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달라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었을 것이며, 의도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사건 이후 ‘어제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하도록 늦게까지 귀가 못 하게 하느냐’라고 ▲▲▲ 직원이 항의를 하자 신입직원들 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의도였다고,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도 위 사람에게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 및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람이 비록 자신의 언행에 대해 ▲▲▲에게 사과를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위 사람의 언행은 부적절하였다.

위 사람의 행위는 위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3조, 「성희롱 예방규칙」 제4조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위 사람을 정보원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는 (주)○○○이 기술협상에서 탈락하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당한 기술협상안을 제시하여 위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켰고, 입찰공고일 전에 사전협의하여 (주)○○○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입찰경쟁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발언을 하는 등 (주)○○○과 유착의혹이 있어 2018.1.9.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문 책 요 구

제 목 징계 업무 부적정 등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대상자 ☆☆☆☆☆부 부장 ▽▽▽

(전 ○○○○○부장, ▼▼▼▼부장)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10. 4. 15.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1. 1.부터 2014. 6. 31.까지 정보원 ○○○○○부에 근무하였고(2013. 2. 1.부터 ○○○○○부장으로 근무), 2016. 1. 2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장으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 ▽▽▽▽부장 징계 회부 부적정

▽▽▽은 2016. 1. 2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장으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6. 10. 20. ☆☆☆☆☆부 ∈∈∈ 책임의 허위 국내출장 관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위 출장 보고의 사유로 ∈∈∈ 책임을, 소속 직원관리 미흡의 사유로 ∈∈∈ 책임의 직속상관인 ≪≪≪ ☆☆☆☆☆부장(이하 ‘≪≪≪ 부장’이라 한다.)을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47조 내지 제49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므로 징계업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감사(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그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47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인사(징계)위원회에 직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직원징계 심의 사유서(정보원 양식)’에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한편 위 사람은 ≪≪≪ 부장으로부터 ≡≡≡ 책임의 출장 관리 감독에 대한 설명과 소명을 들었으나, ≪≪≪ 부장의 직원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조사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을 사유로 ≪≪≪ 부장을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 부장에게 보낸 ‘징계요구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7조에 해당한다.

2.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 수행·관리·감독 부적정

가. 계약 전 용역수행조치 등 회계질서 문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발주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 사람은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과 2013년에는 기술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UUUUU(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4년에는 세종시에서 개최한 행사장 이동을 위한 버스 임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공고도 하기 전에 UUUUU(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1] UUUUU(주)의 계약 전 용역수행 내역

연도	계약일자	수행일자	수행내역	비고
2013	4.18.	3.29.	제2차 문화정보화협의회 진행	
2014	3.17.	1.16.	제1차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정부 세미나 진행	

자료: 감사기간 UUUUU(주)가 제출한 지출증빙자료 재구성

나.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 보조사업 이행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람은 “문화정보화협의회” 개최 후 [표 2]와 같이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호프집, 노래방 또는 노래주점에 간 후 그 비용을 UUUUU(주)로 하여금

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2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명시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업종에 유흥주점, 노래방 명시

위탁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표 2] 위탁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제한업종 집행내역

집행일자	집행내역	사용장소	집행액	비고
2013.5.24.	2차 회식비		375,000원	
2013.10.30.	2차 회식 노래방		205,000원	
2013.12.18.	2차 노래방		396,000원	
합계			976,000원	

자료: 감사기간 UUUUU(주)가 제출한 지출증빙자료 재구성

다. 증빙서류 확인 없이 검사조서 작성 지시 등 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³⁾에 따르면 정보원은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업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⁴⁾되어 있으므로, 정보원은 최종검사 완료 후 위탁사업자에게 정산내역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정산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사업담당자인 ≡≡≡에게 계약조건에 명시된 정산내역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하여,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만 제출받아 검사를 완료한 후 정산 없이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 「보조금법」 제22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

3) 「국가계약법」 제14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④ “갑”은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을”은 정산내역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정산보고 하며,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을”의 청구에 의거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계약·구매업무 규칙(정보원)」 제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에 해당한다.

3. 인사 및 복무규정 위반 등 근무태만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으며, 「복무규정」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위 사람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대상기간: 2015. 1. 1.~2017. 9. 30.), 아래 [표 3]과 같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조기퇴근 하는 등 총 14일에 걸쳐 1,035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 근무태만 현황(2015.1.1.~2017.9.30.)

구분	연도	비근무일자	누락시간	근태누락(분)	내용(사유 등)	비고
2017	1. 20.		17:45-18:00	15	캡스기록(조기퇴근)	4일
	2. 17.		11:35-12:00	25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2. 22.		17:45-18:00	15	캡스기록(조기퇴근)	
	6. 16.		11:10-12:00	50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계			105		
2016	5. 19.		17:15-18:00	45	내부결재(조기퇴근)	5일
	5. 25.		16:20-18:00	100	캡스기록(조기퇴근)	
	6. 10.		14:00-18:00	240	캡스기록(조기퇴근)	
	9. 12.		11:15-12:00	45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10. 12.		17:20-18:00	40	캡스기록(조기퇴근)	
	계			470		
2015	1. 5.		17:35-18:00	25	캡스기록(조기퇴근)	5일
	5. 8.		15:00-18:00	180	메일발송(조기퇴근)	
	5. 22.		15:30-18:00	150	백업센터구축회의(조기퇴근)	
	8. 25.		17:30-18:00	30	캡스기록(조기퇴근)	
	11. 2		10:45-12:00	75	캡스기록(조기퇴근/반차)	
	계			460		

구분	연도	비근무일자	누락시간	근태누락(분)	내용(사유 등)	비고
		합계		1,035		14일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위배된 것으로 정보원 「인사규정」 제47조에 해당한다.

4. 근로계약 부적정⁵⁾

위 사람은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 정보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2014년 1월초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13년 경영계획서 이행 실적 평가계획」의 평가항목 중 “정보화 리더십”부문 평가업무를 추진(2014. 1. 15.~3. 13.)하면서 내부 인력 부족의 사유로 크크크(일용직)를 채용(2014. 1. 13.)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⁶⁾ 및 「복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 채용 시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토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출퇴근 및 사무실 출입기록 등 근무상황을

5) 「인사규정」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징계 시효 3년 도과

6) 제27조(의무) 직원은 직무의 완수, 직장이탈 금지, 창의력 발휘, 품위유지, 친절, 정직, 공정, 겸직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ㄱㄱㄱ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약 1개월(2014. 1. 13~ 2. 9)동안 근무토록 하다가, 2014. 2. 10. ㄱㄱㄱ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ㄱㄱㄱ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무한 기간(2014. 1. 13~2. 9)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2014. 3. 10. 근로계약 연장 시 <<<< ▼▼▼▼부장과 협의를 거쳐 아래 [표 4] 와 같이 편법으로 ○○○(ㄱㄱㄱ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2014. 3 .10.~4. 4)하고, ㄱㄱㄱ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문 인식을 통하여 ○○○의 출입 기록을 대신 남기게 하였다.

이를 근거로 위 사람은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은 다시 ㄱㄱㄱ에게 이체하도록 하여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급여를 보전하여 주었다.

[표 4] 인건비 지급 현황

지급 대상	근무기간	지급금액	비고
	'14. 2. 10. ~ 4. 4.	2,533,120원	실제 근무기간 '14. 1. 13. ~ 4 .4.
	'14. 3. 10. ~ 4. 4.	1,266,560원	

결국 위 사람은 크크크가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입 기록을 위조하였으며, 또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법」 제231조,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위 사람을 정보원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 책 요 구

제 목 기술평가 회의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대상자 ▼▼▼▼부 ◁◁◁◁◁◁팀장 ♡♡♡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 센터(이하 ‘€€€’이라 한다)¹⁾ 업무 총괄 담당자²⁾로 2016. 3. 31. ‘2016년도 IDC 위탁운영 및 관리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일부 평가위원의 평가방법 질문 등에 대해 답하였다.

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원은 계약관련 법령³⁾에 따라 위 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하고,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1) Internet Data Center

2) ♡♡♡♡부 ◁◁◁◁◁팀장(2016.8.24.~ 2017.1.17.) ▼▼▼▼부 ◁◁◁◁◁팀장(2017.1.18.~감사일 현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수행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기술평가회의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년도 업체의 수행 태도·실적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답변해야 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작년 수행업체 참가 여부 및 수행 태도·실적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문에 ‘있다, 비상대응 부분이 개선됨’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평가위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발언이 사업담당자로서 객관적인 평가인 만큼 평가위원이 전년도 업체인 (주)♠♠♠정보기술컨소시엄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평가위원이 프레젠테이션 때 위 업체의 비상대응 실적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업체의 ‘장애처리 방안’과 ‘기술수준 및 비상대응’ 항목에 대한 일부위원의 평가점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위원이 사업담당자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평가했을 여지도 있다.

또한 위 사람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부여 방법관련 질의에 대해 ‘오늘 제안 평가 결과가 가격점수로 뒤집어지지 않도록 점수 차이를 내주라’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기술평가가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했던 발언이고, 동 발언이 부적정한지를 몰라서 했던 발언이고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사람의 발언은 앞서 기술한 계약관련 법령 및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원칙에 위배되어 그 의도대로 실현되었을 경우 가격평가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징계)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위 사람을 정보원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책요구

제 목 징계 업무 및 승진업무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문책 대상자 ▼▼▼▼부장 ♥♥♥

○○○○○부 2급 <<<<

문책 사유

위 ♥♥♥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는 ▼▼▼▼부장, 2015. 1. 1.부터 2016. 1. 28.까지는 ♣♣♣♣♣♣ ▼▼▼▼부장으로서 징계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는 2010. 4. 12.부터 2014. 6. 30.까지는 ▼▼▼▼부장으로서 인사(징계),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2015. 1. 1.부터 2016. 1. 28.까지는 ♣♣♣♣♣♣장으로 ▼▼▼▼부 업무 등을 지휘 감독하였다.

1. 조사 및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위 두 사람은 2015. 9. 4. 언론에 보도된 한민족 정보마당 지도서비스(한국 옛집 지도 서비스¹⁾) 표기 오류 서비스²⁾에 대한 경위 및 조치 현황 그리고 관련 직원(◎◎◎ ◀◀◀◀◀◀장, ♣♣♣ ▼▼▼▼부장, ▼▼▼▼부 ◆◆◆ 선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업명 : 한국옛집 원천데이터 DR 구축 및 서비스 개발('14.7~12월)/ 2014.12.20. 사이트 오픈

2) 한국옛집 지도 서비스에 구글 영문판 지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사용으로 인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오류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47조 내지 제49조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³⁾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요구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징계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으로 징계업무 담당자는 공정하게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감사(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그 비위행위가 「인사규정」 제47조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인사(징계)위원회에 직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직원징계 심의 사유서(정보원 양식)’에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가. ♥♥♥♥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9. 22. 한국 옛집 지도 서비스 표기 오류에 대한 경위와 조치 현황 그리고 관련 직원 3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그 과실여부를 조사하였다.

직원 각자의 비위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조사해야 함에도, 위 사람은 2014년 사업담당자였던 ♣♣♣ 부장, ◆◆◆ 선임이 위 서비스에 구글지도 영문 API를 적용하면서 동해와 독도의 잘못된 표기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⁴⁾하였으나, ●●● 본부장의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았다.

위의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후 수습의 신속한 대처 부족 및 국회와 언론 대응 미흡 이유로 ●●● 본부장을 징계 요구하라는 원장의

3) 제47조(징계사유) 1. 관계법령, 정보원의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을 때, 3. 정보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보원에 재정상의 피해를 야기한 때, 5. 제 28조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4) 2015.9.22. 한민족정보마당 지도서비스 표기오류조사 결과 보고(2쪽)

지시에도 위 사람은 ○○○○ 본부장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개인별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도, 위 3인에 대해 단순히 ‘한민족 정보마당 지도서비스 표기 오류에 대한 징계’라고 표기하여 2015. 9. 30.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구체적 증거자료인 ‘직원 징계 심의 사유서’에도 개인별 구체적 비위행위가 기술되지 않은 채, 전술한 조사결과 보고서로 첨부하여 대체하였다.

즉, 직원 징계 심의 사유서에 ☸☸☸ 부장, ◆◆◆ 선임의 비위 행위는 간략하게나마 기술되어 있으나, ○○○○ 본부장의 비위 행위를 기술하지 않고 단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조사와 징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 본부장을 부당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 본부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47조 제2호에 해당된다.

나. ≪≪≪의 경우

위 사람은 ♥♥♥으로 부터 한민족 정보마당 지도서비스 표기 오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원장에게 징계안건 보고 시 언론 대응관련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부적절 등 사유로 ○○○○ 본부장도 징계해야 한다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 본부장은 2015. 9월에 부임하였으므로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위 사람은 원장의 징계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원장이 제기한 ○○○○ 본부장의 비위 내용을 ♥♥♥에게 추가 조사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 하였다.

이로 인해 '1. ♥♥♥의 경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없는 ○○○○ 본부장을 부당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 제2호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 부적정 및 급여 지급 부적정⁵⁾

《《《는 2010. 4. 12.부터 2014. 6. 30.까지 ▼▼▼▼부장으로 인사,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⁶⁾, 「복무규정」 제3조와 제4조⁷⁾에 따르면 직원은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5) 「인사규정」 제53조 제 2항에 규정된 징계 시효 3년 도과

6) 제27조(의무) 직원은 직무의 완수, 직장이탈 금지, 창의력 발휘, 품위유지, 친절, 정직, 공정, 겸직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7) 제3조(책임완수) 직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직원으로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보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따라서 위 사람은 인사 및 회계업무 총괄자로서 법령과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 채용과 그에 따른 급여 지급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 ○○○○○부장으로부터 2014년 1월초 평가업무⁸⁾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용직(ㄱㄱㄱ)을 우선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업무 협조 요청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4. 1. 13.부터 ㄱㄱㄱ가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ㄱㄱㄱ와의 근로계약 연장 당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근무한 1개월분의 급여는 ○○○(ㄱㄱㄱ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급여를 지급하여 보전하겠다는 ▽▽▽ ○○○○○부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묵인하였다.

그 결과 ▽▽▽ ○○○○○부장이 ㄱㄱㄱ의 급여(근로계약없이 근무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와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그 출입 기록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법」 제231조, 「인사규정」 제27조, 「복무규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 규정에 해당한다.

3. 특별승진 부적정⁹⁾

《《《는 2010. 4. 12.부터 2014. 6. 30.까지 ▼▼▼▼부장으로 인사와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한편 한국문화정보원¹⁰⁾(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정보화 기획분야(1명) 신규

8)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13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계획』의 “정보화 리더십” 부문의 평가업무 추진(2014.1.15.~3.13.)

9) 「인사규정」 제53조 제 2항에 규정된 징계 시효 3년 도과

10) 당시 기관명은 ‘한국문화정보센터’이나, 편의상 한국문화정보원이라 한다.

직원 채용 공고 시 5급 직원 임용 자격기준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2012. 12. 1. 최종 합격자 ㉟㉟㉟을 6급으로 채용하였고, 2014. 5. 26.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㉟㉟㉟을 5급으로 특별 승진시켰다.

가. 신규직원 직급 책정 부적정

「인사규정」(2012. 10. 26.개정) 제10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임용은 <별표 1>의 직원 임용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 하되, 신규 채용자의 직급도 <별표 1>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정보원은 2012년 정보화(기획)분야 1명 신규 채용 공고 시 [표]와 같이 그 채용 자격 요건을 당시 「인사규정」 제10조 <별표 1>의 5급 직원 임용 자격 요건으로 공고하였다.

[표] 정보화(기획분야) 직원 신규 채용 공고시 자격 요건

채용공고문 자격요건 내용	<별표 1호> 직원 임용 자격 기준 (인사규정 제10조(채용) 제4항 관련)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 경력 근 무한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 경력 근 무한 자	○ 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직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3. 7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4.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따라서 위 사람은 「인사규정」 제10조 <별표 1>의 요건과 공고된 임용 자격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5급으로 채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최종 합격자 ㉟㉟㉟을 5급이 아닌 6급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㉟㉟㉟이 5급 업무를 수행하기엔 경력이 적합하지 않다는 면접위원 1명의 비공식적 의견¹¹⁾을 소장에게 보고하였고, 소장이 최종계약서 작성 시 협상하여 직급을 결정하라고 지시하자, 당사자인 ㉟㉟㉟에게 이를

11) 면접평가결과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비공식적인 의견

설명하고 협상하여 6급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㉟㉟㉟이 5급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면 면접전형에서 탈락시켜야 할 사안이므로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명 및 동의를 얻어 ㉟㉟㉟을 6급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공고된 5급 임용자격 기준과 다르게 6급으로 채용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나. 특별승진 부적정

한편 6급 ㉟㉟㉟은 2014. 2~3월경에 2012년 채용 당시 5급 직원 임용자격 요건으로 공고되었는데 6급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연봉 협상 시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㉟㉟㉟ 직원이 직급 조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기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㉟㉟㉟ 직원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면, 위 사람은 직급 재 획정을 통해 시정해야 했음에도 그 당시에는 동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위 사람은 2014. 5. 26. 「인사규정」 제26조(특별승진)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㉟㉟㉟의 5급 특별승진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특별승진이 의결되자 ㉟㉟㉟을 5급으로 특별 승진 시켰다.

한편 「인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현 직급에서 근속 연차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승진 소요 연수의 2분의 1이상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 센터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제2호), △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관서의 표창을 받은 자로 그 공헌이 현저한 자(제3호)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직원을 특별승진을 시킬 경우 최저 승진 소요 연수 및 그 자격을 정확히 검토하여 승진시켜야 한다.

특히 위 제1호 요건인 경우 공적조서 등을 통해 공헌도를 검토한 후 특별 승진을 시켜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공적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근무경력이 18개월에 불과한 6급 ≡≡≡ 직원의 '현저한 공헌 내용'에 검토 없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 직원이 2013년도의 인사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우수 직원으로 기관장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공헌자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무경력이 18개월에 불과한 ≡≡≡ 직원이 S등급과 우수 직원상을 받은 것은 당해 연도에 업무에 대한 평가일 뿐, 그간 조직 발전에 '현저한 공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26조 및 제27조, 「복무규정」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47조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위 사람을 정보원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주의요구·통보

제 목 출장 승인 및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문화정보화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¹⁾하고 있다.

정보원은 자체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표]와 같이 소속 직원이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예산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의 출장을 승인하였다.

[표]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 심의업무 지원 출장 현황

연도	출장자	출장일수	수행업무
2012		115일	행안부, 법무부, 대법원 정보화 예산 심의 업무지원
2013		92일	기재부 정보화 예산업무 지원
2014		96일	국토부, 감사원 등 정보화예산 관련 의견제시 및 자문
2015		110일	국토부, 감사원 등 정보화예산 관련 의견제시 및 자문
2016		-	-
2017		10일	미래부, 해수부 정보화예산 관련 의견제시 및 자문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1)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1조(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② 한국문화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기술을 수행한다. 1. 문화정보화 기획 및 중장기 방향 연구 지원 2. 주관부서, 각급 기관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업무평가 지원 3. 주관부서, 각급 기관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지원 4.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문화정보화 정책개발을 위한 동향 분석 및 법·제도 조사연구

1. 출장 승인 부적정

정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국내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원은 기획재정부 ■■■■■팀 담당사무관이 유선으로 정보화예산심의 지원을 요청하자,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연간 최대 115일에 이르는 출장을 승인하였다.

감사기간 중 정보원은 해당 출장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예산서를 검토하여 사업타당성, 예산지원적정성 검토결과 작성 등 기획재정부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정보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복무규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 직원들의 출장 승인은 부적절하다.

2.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정보원의 「차량운영관리규칙」에 따르면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등 관용차량의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차량운전자는 차량사용대장을 정확히 기재하여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과 ●●●은 위 [표]의 기획재정부 출장기간(연간 92일에서 115일) 중 관용차량을 사용하면서 주말, 공휴일 등에도 정해진 차고지인 정보원에 관용차량을 반납하지 않았고, 차량사용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정보원 관용차량 관리담당자 ■■■■■은 위 직원들이 차량사용대장을 작성

하지 않는데도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사람들이 주말, 공휴일 등에도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직원 식사 시 이동 지원 및 정보원 업무와 관련 없는 타 기관 방문을 지원하는 등 정보원 업무와 관련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하였다.

3. 여비 수령 부적정

정보원 「출장규칙」에 따르면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출장자는 동 규정에 따라 적정 여비를 청구·수령하여야 한다.

▽▽▽(2013년²⁾)과 ●●●(2014, 2015년)은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온 후 ‘상시출장 근무내역서’에 근거하여 숙박일수에 정액 5만 원을 곱하여 숙박비를 수령³⁾하였다.

그러나 감사 중 위 두 사람의 사무실 출입기록, 고속도로 요금 영수증 등을 확인한 결과 ▽▽▽은 2013. 10. 1., ●●●은 2015. 9. 16., 2015. 9. 17.에 출장지에서 숙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일자 숙박비는 여비 수령분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두 사람은 이를 그대로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1일분)과 ●●●(2일분)이 부당하게 수령한 숙박비를 환수 조치하시고, (시정)
- ② 「차량운영관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 ●●●과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관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2) 2012년은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으로 숙박비 지급내역 없음.

3) 정보원의 2017.8.7. 개정 전 「출장규칙」에 따르면 숙박비는 정액(5만원)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소속 직원이 다른 기관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정보원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주의요구·통보

제 목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 계약 및 사업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문화정보서비스 발전방향 및 활용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은 2012년까지는 정보원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는 [표 1] 과 같이 민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1]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위탁 현황

연도	위탁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2013		34,760,000원	2013.4.18.~12.31.	
2014		48,900,000원	2014.3.17.~12.31.	
2015		61,790,000원	2015.4.30.~12.31.	
2016		45,403,400원	2016.5.24.~12.31.	
2017		44,800,000원	2017.4.~12.15.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정보원은 2013년과 2014년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의 위탁사업자로 UUUUU(주)를 선정하였다.

1. 위탁계약 물량 산출 부적정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탁사업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¹⁾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원이 UUUUU(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산출내역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원은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지급대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원은 2013년 계약 시 [별표 1] 과 같이 ‘식비/강사료/회의장 임차료 등’으로만 기재하는 등 각 세비목 및 물량 등을 알 수 없게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위탁사업자가 집행한 내역이 당초 계약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비목별로 확인·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위탁사업 추진 및 이행관리 부적정

가. 계약 전 사전집행 요구 등 회계질서 문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 2012.9.22.)」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③ 각 세비목 및 그 물량 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므로²⁾ 발주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정보원은 [표 2]와 같이 2013년에는 기술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UUUUU(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014년에는 세종시에서 개최한 행사장 이동을 위한 버스 임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공고도 하기 전에 UUUUU(주)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2] UUUUU(주)의 계약 전 용역수행 내역

연도	계약일자	수행일자	수행내역	비고
2013	4.18.	3.29.	제2차 문화정보화협의회 진행	
2014	3.17.	1.16.	제1차 빅데이터 시대의 디지털 정부 세미나 진행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보조사업 이행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문체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³⁾」 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2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명시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 의무적 제한업종에 유흥주점, 노래방 명시

그러나 정보원은 “문화정보화협의회” 개최 후 [표 3]과 같이 참석자들과 함께 호프집, 노래방 또는 노래주점에 간 후 그 비용을 UUUUU(주)로 하여금 위탁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여 「보조금법」 제22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위반하였다.

[표 3] 위탁사업비 중 업무추진비 제한업종 집행내역

집행일자	집행내역	사용장소	집행액	비고
2013.5.24.	2차 회식비	늘기뿐	375,000원	
2013.10.30.	2차 회식 노래방	쌔시봉 노래방	205,000원	
2013.12.18.	2차 노래방	ReeYa노래방	396,000원	
2014.9.4.	회식비용	뽕헨호프	215,000원	
2014.12.12.	2차 비용	하모니노래방	208,000원	
2014.12.12.	3차 비용	한강호프	170,000원	
합계			1,569,000원	

다. 증빙서류 등 확인 없이 감사조서 작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제15조⁵⁾에 따르면 정보원은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원 「계약·구매업무 규칙」에 따르면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감독하여야 하며⁶⁾, 이 사업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⁷⁾되어 있으므로, 정보원은 최종검사⁸⁾

5) 「국가계약법」 제14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정보원 「계약·구매업무 규칙」 제39조(계약이행의 감독 및 검사) ①계약책임자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서·주문서·설계서·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약 적정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7)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④ “갑”은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을”은 정산내역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정산보고 하며,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을”의 청구에 의거 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8) 정보원 「계약·구매업무 규칙」 제3조(정의) 5. “검사”라 함은 계약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주문서·설계서·시방서·납품서·입고전표 기타 계약 관련 증빙서류와 수량규격·품질 등 계약이행내용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완료 후 위탁사업자에게 정산내역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정산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원은 사후정산조건부 계약으로 추진한 2013년과 2014년 사업 완료 후 계약조건에 명시된 정산내역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만 확인한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정산도 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감사 기간 중 UUUUU(주)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재정산한 결과 2014년 해외연수 대행 여행사에 실제 집행한 금액이 사업완료 후 제출한 자료보다 441,000원 적게 집행되는 등 [별표 2, 3]과 같이 2013년과 2014년 합계 624,141원이 적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확정계약방식 추진의 적정성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보원이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실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예산 중 기념품 제작, 만찬 및 다과 비용 등은 참석자 수에 따라 그 소요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해당 비목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보원은 2014년까지는 계약조건에 정산내역표와 증빙서류에 따른 정산을 필수조항으로 명시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은 사업 완료 후 위탁사업자가 예산 집행 내역도 없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서만 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 위탁사업자가 집행한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감사기간 중 정산한 결과에 따라 UUUUU(주)로부터 624,141원을 환수 조치하시고,(시정)
- ② 계약 체결 시 비목별로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계약담당자와 “문화정보화협의회 운영” 사업 이행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담당자를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그리고 입찰 전에 그 소요비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하거나, 계약조건에 정산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시정·주의요구

제 목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화정보원’ 이라 한다.) ▼▼▼▼부장 ▼▼▼, ▼▼▼▼
부장 ★★★는 동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각각 ▼▼▼▼부,
▼▼▼▼부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정보원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직원은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으며,
「복무규정」 제5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부서장으로서 본인들의 결근, 지참, 조퇴 등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조기 퇴근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위 사람들의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
1. 1.~2017. 9. 30.), 아래 [표 1]과 같이 ▼▼▼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조기퇴근 하는 등 총 14일에 걸쳐 1,035분을, ★★★는 지각하거나 조
기퇴근 하는 등 총 19일에 걸쳐 1,765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근태 누락시간 현황(2015.1.1.~2017.9.30.)

따라서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중에서 [표 2]와 같이 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금액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다.

[표 2] 회수해야 할 연가보상비 금액(2015. 1. 1.~2017. 9. 30.)

(단위: 원)

구분	★★★			▽▽▽		
	시간	금액(원)	산출내역	시간	금액(원)	산출내역
2015	11.9(715분)	209,035	17,566 × 11.9	7.7(460분)	138,376	17,971 × 7.7
2016	12.5(750분)	251,662	20,133 × 12.5	7.8(470분)	152,724	19,580 × 7.8
2017	5.0(300분)	104,945	20,989 × 5	1.8(105분)	37,006	20,559 × 1.8
계	29.4(1,765분)	565,642		17.3(1,035분)	328,106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중 근무를 하지 않은 일수 분의 상당한 금액 (▽▽▽ 328,100원, ★★★ 565,640원)을 환수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 ② 향후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제안요청서 등 사업계획 내용 사전 협의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능력평가(80±10점)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기간을 입찰자 간에 공평 또는 적정하게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제안요청서 내용을 입찰공고 전에 특정업체에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 입찰공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1. 한국적 산업활용 디자인DB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원은 한국적 산업활용 디자인DB 구축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

하는 지원과제로 선정받기 위하여 과제선정일(2015. 5. 26.) 및 입찰공고일(2015. 6. 30.) 이전인 2015년 5월초부터 전차사업 수행자인 (주)○○○과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이나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거나 예산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공고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입찰자와 다르게 긴급 입찰공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주)○○○은 경쟁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그만큼 공정한 경쟁이 저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LOD기반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오픈DB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국가DB 사업 지원과제에 응모하기 위하여 과제선정일(2016. 3월) 이전인 2016년 2월경부터 전차사업 공동수행자인 (주)○○○과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안 및 PT발표자료의 내용이나 사업추진방향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거나 예산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전달받았고, 지원 과제로 선정된 국가LOD기반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오픈DB 구축사업의 입찰공고일(2016.5.18.) 이전에도 (주)○○○과 지속적으로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거나 예산서를 대신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공고 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정보원에서 작성한 긴급입찰사유서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 가격이 1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인 경우 공고기간을 25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긴급공고를 요청하였으나, 위 규정은 2015. 12. 22. 개정되면서 공고

기간 단축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다른 입찰자와 다르게 긴급 입찰공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주)○○○ 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업은 (주)○○○ 컨소시엄만 응찰하여 두 번의 유찰을 통해 (주)○○○ 컨소시엄이 수의 계약으로 낙찰 받음으로써 정보원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업체와 사전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정보원이 (주)○○○과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주)○○○이 낙찰자로 선정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입찰공고 이전 사전협의를 통해 낙찰받은 내역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정보원은 입찰 공고일 전에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특정업체와 협의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사전에 업체가 정보를 습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전문지식의 수집 및 습득과정에서 이전 사업자의 지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전문지식 청취 채널 확보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입찰 공고일 전에 특정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부 ★★★ 부장은 ‘정보화 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문책 요구함

[처분요구 일련번호 1번 참조]

[참고사항]

한국문화정보원 ▽▽▽▽부장 ★★★는 (주)○○○이 기술협상에서 탈락하자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당한 기술협상안을 제시하여 위 업체를 사업에 참여시켰고, 입찰공고일 전에 사전협의하여 (주)○○○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입찰경쟁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기술능력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발언을 하는 등 (주)○○○과 유착의혹이 있어 2018.1.9. 검찰에 수사요청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정보화사업 참여기술자 인력 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문화정보화사업 전산화 등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표 1]과 같이 4개의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표 1]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구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수행자	참여업체
1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용역	1,115	2014.06.25. ~2014.12.31.	(주)○○○○	(주)○○○○
2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345	2015.07.29. ~2015.12.15.	(주)○○○○	(주)○○○○
3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 공유 활성화사업	1,057	2016.06.01. ~2016.12.15.	(주)○○○○	(주)○○○○, (주)■■■■■■■■, (주)▲▲▲정보기술
4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사업	1,015	2017.05.24. ~2017.12.15.	(주)○○○○	(주)○○○○, (주)■■■■■■■■
계		3,532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적정한 업무처리 기준

정보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면서 [표 2]와 같이 참여기술자의 투입인력 변경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안요청서에 고지하였다.

[표 2] 제안요청서의 투입인력 변경에 관한 고지 내역

사업명	고지 내역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용역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공유 활성화사업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을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4개 사업의 대가 산정액 합계 3,532백만 원의 86.2%(3,046백만 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투입공수 방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기준 가이드」에 따른 인건비 단가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별 노무비 등 직접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엄격한 참여기술자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원은 위 사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낙찰업체의 참여기술자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투입인력을 변경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부적절한 인력이 투입될 경우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 인력 임의 변경 등

정보원은 위 4개 사업의 낙찰업체인 (주)○○○의 요청에 따라 [표 3]과 같이 인력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인력변경 승인 내역

사업명	당초				승인 내역			
	성명	담당업무	등급	투입공수	성명	담당업무	등급	투입공수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용역		PM	특급	6MM		PM	고급	9MM
						연계,기획	중급	6MM
		PL	고급	6MM		PL	고급	6MM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개발	초급	2.5MM		개발	초급	2.5MM
		디자인	중급	1MM		디자인	고급	1MM
		퍼블리싱	중급	2MM		퍼블리싱	중급	2MM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공유 활성화사업		품질관리	고급	3.5MM		품질관리	고급	3.5MM
		기획	중급	9MM		기획	중급	9MM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 체계 고도화사업	승인내역 없음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위 [표 3]에 따르면 정보원은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 정보제공체계 구축 용역사업’은 PM 및 DB구축 분야 2명(투입공수 12MM)에 대해 추가 투입인력(기획) 1명 포함 최종 3명(투입공수 21MM)으로 변경·승인하였으며,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사업’은 개발, 디자인, 퍼블리싱 분야 3명(투입공수 5.5MM)에 대해 동일 분야 동급 이상 인력 3명(투입공수 5.5MM)으로 변경·승인하였다. 또한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공유활성화 사업’은 2회 과업변경(1차 : 기업해외 진출지원→방송채널활용 홍보, 2차 : 공간정보구축 면적25,000m²→면적13,000m², GIS엔진 도입 및 비콘기반 안내서비스 구축)과 투입인력 변경요청(품질관리 및 기획 2명, 12.5MM)에 대해서도 요청한대로 최종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정보원에서 최종 승인한 내역과 (주)○○○의 실

제 참여한 기술자 내역을 비교·점검한 결과, [표 4]와 같이 46.7MM(투입공수 기준)이 부족하게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입인력의 변경 요청 및 정보원의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문화정보화사업 인력 투입내역 및 미참여 내역

사업명	계약기간	업체명	최종 투입내역			고용보협기간		미참여 월수	비고
			성명	참여율	참여기간 (MM)	취득일자	상실일자		
2014년 맞춤형 공공 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용역	2014.06.25. ~ 2014.12.31.			100%	9	2010.12.01.			
				33%	2	2000.09.01.	2016.03.01.		
				33%	2	2008.11.03.			
				100%	9	2013.05.27.	2015.06.13.		
				100%	6	2009.04.27.	2015.01.15.		
				100%	6	2010.03.23.			
				100%	6	2011.09.07.	2016.06.15.		
				30%	1.8	2010.03.15.			
				30%	1.8	2013.07.29.			
				100%	6	2014.07.01.	2015.02.14.		
				100%	6	2004.12.15.			
				100%	6	2012.09.26.	2015.06.01.		
				100%	6	2011.07.11.	2015.03.17.		
				100%	6	2010.09.13.	2016.09.01.		
				100%	6			6.0	
				100%	6	2012.02.15.	2015.04.17.		
				100%	6	2011.12.15.	2015.08.01.		
				100%	6	2011.02.01.			
				100%	6	2011.07.11.	2014.07.26.	5.0	
				100%	6	2013.03.18.	2014.08.01.	5.0	
				100%	6	2013.05.27.	2015.06.13.		
				100%	6	2011.07.04.	2014.09.24.	3.0	
				100%	6	2011.07.04.	2014.10.30.	2.0	
				92%	6	2013.09.02.	2015.09.08.		
	92%	6	2013.02.20.	2014.08.29.	4.0				
	92%	6	2012.05.29.	2014.11.24.	1.0				
	92%	6	2012.05.02.	2015.05.15.					
	92%	6	2013.07.22.	2015.07.01.					
	92%	6			6.0				
소 계					163.6			32.0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2015.07.29. ~ 2015.12.15.			100%	6	2010.12.01.			
				100%	6	2011.09.07.	2016.06.15.		
				100%	6	2013.02.12.	2017.05.01.		
				100%	1	2015.05.27.	2016.07.06.		
				100%	2	2011.12.15.	2015.08.01.	2.0	
				100%	2	2008.11.03.	2015.08.25.	1.0	
				100%	9	2011.03.16.			
	100%	6	2013.05.27.	2015.06.13.	6.0				

사업명	계약기간	업체명	최종 투입내역			고용보합기간		미참여 월수	비고
			성명	참여율	참여기간 (MM)	취득일자	상실일자		
				100%	6	2013.05.20.	2016.11.15.		
				100%	4	2013.09.03.	2017.01.04.		
				20%	0.8	2000.09.01.	2016.03.01.		
				20%	0.8	2014.12.15.	2016.05.01.		
				50%	1	2014.12.01.	2016.08.01.		
소 계					50.6			9.0	
2016년 맞춤형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사업	문화 국민 2016.06.01. ~ 2016.12.15.			100%	9	2010.12.01.			
				100%	9	2011.09.07.	2016.06.15.		
				100%	9	2010.03.23.			
				100%	9	2013.02.12.	2017.05.01.		
				100%	2	2011.02.01.			
				100%	1	2015.08.03.	2016.09.24.		
				100%	1	2014.10.01.			
				100%	9	2011.03.16.			
				100%	9	2016.05.09.			
				100%	7	2013.09.01.	2017.05.01.		
				20%	1.4	2016.04.11.			
				50%	3	2013.09.01.			
				50%	3.5	2013.09.01.	2017.05.01.		
				100%	7	2016.03.30.	2016.09.12.		
				50%	3.5	2016.03.30.			
				50%	7	2016.01.01.	2017.08.01.		
				100%	7	2016.05.06.	2017.02.01.		
		100%	7	2016.06.01.	2017.02.01.				
		100%	7	2016.07.18.	2017.07.20.	1.0			
		100%	7	2014.11.01.					
소 계					118.4			1.0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사업	2017.05.24. ~ 2017.12.15.			100%	7.5	2010.12.01.			
				100%	7.5	2010.03.23.			
				22%	1.6	2016.11.14.	2017.07.01.		
				100%	1				
				100%	1	2017.06.13.			
				100%	9.5	2011.03.16.			
				100%	9.5	2016.05.09.			
				100%	7.5	2017.03.16.			
				22%	1.6	2016.01.01.	2017.08.01.		
				100%	2	2015.01.01.			
				34%	2.4	2013.02.12.	2017.05.01.		
				17%	1.2	2017.05.15.			
				17%	1.2	2017.09.05.			
				100%	7.5	2017.03.02.			
				100%	7.5	2016.10.01.			
				100%	7.5	2014.12.08.			
				100%	1.5	2016.07.18.	2017.07.20.		
				100%	6	2017.06.12.			
				100%	7.5	2017.09.24.		4.7	
		100%	7.5	2017.03.16.					
		100%	7.5	2014.11.01.					
		100%	7.5	2015.09.01.					
소 계					110.1			4.7	
합 계					442.7			46.7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
용역사업’은 사업계획 인원 29명(투입공수 163.6MM)과 다르게 8명이 참여하지 않
았고(미투입공수 32MM), ‘2015년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확대운영 사업’은 사업계
획 인원 13명(투입공수 50.6MM)과 다르게 3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미투입공수 9MM).

또한 ‘2016년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공유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인원 20명(투입공수 118.4MM)과 다르게 1명이 참여하지 않았으며(미투입공수
1MM), ‘2017년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사업’은 사업계획에는 18명
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미투
입공수 4.7MM).

특히 2017년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AAA(1MM),
BBB(2.4MM)은 현재(2017.11.9. 기준)까지 사업에 투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CCC(1MM), DDD(1.2MM), EEE(1.2MM)으로 변경하여 사업 기간 내에 투입할 예
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FFF은 당초 7.5MM 투입 계획이었으나
2017.05.24.부터 2017.07.20.까지 1.5MM 투입하였고, 나머지 6MM은 GGG(상주인
력)으로 대체하여 2017.07.21.부터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HHH는 7.5MM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7.9.24.부터 투입하여 4.7MM
부족하게 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7년 사업도 감사일 현재까지 업체의
인력변경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정보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

면서 현재 과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기술자의 과업 및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겠으며, 향후 업체에서 인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료를 비교하여 참여인력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입찰공고 내용을 위배하여 사업 참여인력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 ② 향후 참여인력의 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하도급 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문화정보화 사업의 지원, 대국민 통합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및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원의 자체 「계약·구매업무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모든 구매 및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보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도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정보화사업의 하도급 관리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당초 승인된 과업과 다르게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여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술자 투입인력이 과업변경 내역과 다르게 적게 투입되었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업체에서 임의로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1. 하도급 관리 부적정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DB 사업 지원과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존가능성과 활용성이 우수한 DB를 선정하여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보원에서는 위 사업에 대해 과제신청을 하여 ‘2016년(LOD 기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DB 구축사업’에 대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표 1]과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관사업자인 (주)○○○ 컨소시엄과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국가DB사업 기관별 역할

사업명	기관별 역할	수행업무	비고
2016년(LOD 기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DB 구축사업 (계약기간 : 2016.7.19.~2016.12.20.)	미래창조과학부 (주무부처)	예산배정, 사업계획 승인 및 총괄관리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사업과제 심의 및 사업자 선정, 사업감리, 과제 총괄관리 및 성과관리	예산 직접실행
	한국문화정보원 (주관기관)	과제신청, 선정과제에 대한 수행, 감리협조, 사업관리 및 보고	사업관리
	(주관사업자)	사업수행 및 보고	사업수행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정보원에서 작성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00호)에 따라 주관 기관이 검토 후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금액의 10%이상을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주관사업자 및 공동사업자는 위 사업에 대해 과업변경을 논의(2016. 8. 12.)한 결과, 주관사업자인 (주)○○○은 부동산문화재 구축대상 기관인 ‘국립전주박물관의 사정에 의해 당초 부동산문화재 20건을 구축 하려고 했던 것을 부동산문화재 6건과 사이버박물관서비스 구축 및 콘텐츠 60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정보원에 과업변경을 요청(2016. 11. 15.)하였다.

(주)○○○에서 제출한 과업변경요청서 및 예산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기 계약된 산출내역서 상 부동산 문화재 구축비(45,977,692원)를 줄어든 구축 DB수에 따라 금액(13,796,807원)하고 사이버박물관 구축비(32,180,885원)를 추가하는 것으로만 하였고, 인력 및 계약금액 등 다른 변동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표 2]와 같이 (주)○○○에서 요청한 과업변경 내역을 그대로 승인(2016. 11. 18.)하였다.

[표 2] 과업 변경 내역

변경요청내용	기존	변경	변경유형 및 규모
3차원 데이터의 부족한 수량 14점을 사이버박물관 구축으로 변경 요청	1. 3차원 데이터(3D) 부동산문화재 : 20건 2. 3.	4. - 3차원 데이터(3D) 부동산문화재 : 6건 5. - 사이버박물관 서비스 구축 6. - 사이버박물관 콘텐츠 구축 : 60건	- 기타 : 개발, 장비, 인력 변경없음 - 변경 규모 및 비용 변동없음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주)○○○에서는 정보원에서 승인한 내역과 다르게 [표 3]과 같이 참여인력 7명에 대해 사전승인 없이 투입인력에서 제외하였고, 과업이 변경된 부

분도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외주 위탁계약)한 사실이 이번 감사기간동안 확인되었다. 또한 배민호 등 5명의 인력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사업 참여인력 내역

사업명	계약기간	업체명	사업참여인원내역			고용보험기간		미참여월수	비고
			성명	참여율	참여기간(MM)	취득일자	상실일자		
2016년(LOD기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 DB 구축사업	2016.07.19. ~ 2016.12.20.			100%	5.00	2016.03.30.			
				100%	5.00	2015.12.01.			
				48%	2.40	2014.07.01.	2016.08.13.	1.40	참여기간부족
				100%	5.00	2014.10.13.			
				100%	5.00			5.00	외주 위탁계약에 따라 투입되지 않은 인력
				95%	4.75			4.75	
				95%	4.75	2015.11.24.	2016.07.01.	4.75	
				95%	4.75			4.75	
				95%	4.75			4.75	
				95%	4.75			4.75	
				95%	4.75			4.75	
				100%	5.00	2015.12.14.	2017.06.01.		
				100%	5.00	2016.06.07.			
				75%	3.75	2013.11.11.	2016.09.01.	2.00	참여기간부족
				75%	3.75	2015.08.17.			
				45%	2.25	2015.01.12.	2016.07.07.	2.25	미투입
				40%	2.00	2015.07.27.	2016.07.01.	2.00	미투입
				75%	3.75	2015.03.25.	2016.09.10.	1.75	참여기간부족
				40%	2.00	2015.07.13.			
				55%	2.75	2016.06.07.			
	55%	2.75	2016.01.18.						
	35%	1.75	2014.09.26.						
계					90.4			47.65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이번 감사기간 중 (주)○○○○에서는 자체 인력 7명을 투입인력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 4]와 같이 외주업체에 위탁계약(하도급)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보원에서는 투입되지 않은 인력 7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의 산정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표 5]와

같이 계약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외주업체에 해당 과업이 위탁되었다고 해명하였다.

[표 4] 참여인력을 제외하여 하도급한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획	제외 인원 산출내역	비고
제외 인력	투입인원 및 공수(MM)	23명(90.4MM)	7명(47.65MM)	
	금액	818,837,765	281,958,533	- 총계약금액(1,259,750,407원) - ◎◎◎ 지분율(65%)
하도급			229,900,000	
			43,670,000	
	소계		273,570,000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산출내역서 기준을 적용한 제외 인력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명	등급	투입 개월	제경비 (52.4%)	부가세	이윤 (6.78%)	합계
	중급	5.00	0.524	3,542,443	2,641,954	41,608,824
	중급	4.75	0.524	3,365,321	2,509,856	39,528,383
	초급	4.75	0.524	2,900,325	2,163,062	34,066,636
	초급	4.75	0.524	2,900,325	2,163,062	34,066,636
	초급	4.75	0.524	2,900,325	2,163,062	34,066,636
	고급	4.75	0.524	4,198,157	3,130,985	49,310,709
	고급	4.75	0.524	4,198,157	3,130,985	49,310,709
합 계						281,958,533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SW산업협회 2015년 기준 적용)

그러나 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과업수행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주)◎◎◎이 하도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과업 내역과 다르게 투입인력을 감축하여 해당 인건비로 하도급 계약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급 규정을 위배하여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었다.

나. 정보원 자체 수행 사업의 경우

정보원은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舊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1)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제안서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입찰 공고할 경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의 자체 「계약·구매업무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정보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정보원에서는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한해 입찰하도록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 및 운영용역’, ‘문화이슈콘텐츠 및 홍보 제작 운영용역’, ‘문화데이터 융합 페스티벌 운영용역’ 등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과 함께 입찰공고를 추진하였다.

더욱이 정보원에서는 운영용역 등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사업과 함께 묶어 입찰을 실시하면서도 일반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하도급 승인대상이 아니며, 단순 물품의 구매에 해당되어 하도급 승인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원은 낙찰업체인 (주)○○○이 하도급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주)○○○은 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별표]와 같이 일반용역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공사²⁾ 및 소프트웨어사업³⁾은 하도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하도급의 사전승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도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1항 :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록 하고 있으나, 물품 및 일반용역은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영용역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이 없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승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용역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용역은 해당사업 용역계약서 및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낙찰 받은 용역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정보원에서는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계약이행상황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했으며, 과업의 일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 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

또한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낙찰업체가 해당 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업을 검토하여 하도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문화정보원은 해당 사업수행업체가 하도급한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하도급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하도급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당초 과업과 다르게 인력을 감축하여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계약·구매업무 규칙」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계약이행 및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물품관리업무 소홀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사무용가구 등 총 1,297점¹⁾(2017. 9. 4. 기준)을 고정자산(이하 “물품”이라 한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보원 회계규정 제60조(현물조사)²⁾ 및 제59조(관리대장)³⁾에 따르면 물품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현물(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보원 물품담당자는 정기적인 물품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부족한 물품, 또는 오기록된 물품 등에 대해서 조정, 등재, 손망실, 오기록 정정 등을 통하여 실 보유 물품과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가구, PC, 기기 등 891점, 소프트웨어 등 406점 등 총 1,297점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자산의 적절한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총괄적인 현물(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고정자산의 취급책임자는 고정자산관리부를 비치하여 고정자산의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정리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총괄하여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고정자산 관리규칙 제10조(자산번호) 제1항에 따라 고정자산에는 개별적으로 자산기호를 부여하고, 각 자산에 고정자산 관리기호를 부착(바코드)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원은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2016년 정보원에서 실시한 재물조사(2016. 10. 7./2014~2015년 미실시) 실태를 살펴보면, 재물조사 담당자는 태그(바코드 방식) 리더기 장비 등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실태를 확인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물품, 물품 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육안으로만 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일부 물품의 경우 내용연수 및 물품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부서의 요구대로 불용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물품조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물품 1,297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 사무용 가구 등 67점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 문화관광연구원에 이관(2016.1.2.8.)된 112점, 2013년 불용 처리된 7점을 관리대장에서 삭제하지 않았으며, △ 태그 미 부착 110점, 태그 오류 36점이 확인되었고, △ 물품 취득 후 259점은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 고정자산(물품)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

(단위 : 점)

구분	①보유 현황(관리대장상) 2017.9.4 기준	②관리대장 미정리 (2016.1.28 문광연 이관)	소계	보유 및 미보유 등 현황			③보유물품 유형별 관리실태 (⑥+⑦+⑧+⑨)					기타 문광연 이관물품 대장상 누락 등 각종사유
		정상 이관		③보유	④미보유	⑤2013년 불용처리후 미삭제	⑥태그 일치	⑦태그 미부착	⑧태그 오류	⑨태그 부착불가(미관리)	⑩취득 후 미등재	
총계	1297	112	1185	1111	67	7	396	110	36	569	259	15
가구, PC, 기기 등	891	43	822	773	42	7	396	110	36	206	244	12
소프트웨어 등	406	69	363	338	25	-	-	-	-	363	15	3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별표 : 사무용 가구 등 물품확인 결과)

이처럼 정보원은 매년 정기재물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제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전수조사 결과 사무용 가구 등 67점이 미확인 되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① 소재 미확인, 손망실 등의 물품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담당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통보)**

② 또한 앞으로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미확인 된 물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회계규정」에 따라 재물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물품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별표] 사무용 가구 등 물품 확인 결과

□ 문화관광연구원 업무 이관 후(2016.1.28.) 물품관리대장 미정리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3000000006	통계기능조정사무집기	책상의자와 19종	22,500,000	2015-12-31	
2	0040010020026	삼성 노트북	CN/NT900X39-K59	1,287,160	2014-09-25	
3	0040010020027	삼성 노트북	CN/NT900X39-K59	1,336,160	2014-09-25	
4	0040020010068	LG전자 LED 모니터	23MA53D 23 "		2013-12-31	
5	0040020010069	LG전자 LED 모니터	23MA53D 23 "		2013-12-31	
6	0040010010096	SUMSUNG PC	DM300S1A		2013-12-31	
7	0040020010073	LG전자 모니터(27')	27EA53VQ		2013-12-31	
8	0020030000001	열제본기	HEL10S-60	265,500	2013-12-31	
9	0060070000062	VMware vSpjere 5	VMware vSpjere 5 Enterprise	6,490,000	2013-12-05	
10	0040050010003	팩스(D410팩스킷)	팩스(D410팩스킷)	385,000	2013-11-22	
11	0020010010001	신도리코 D410	신도리코 D410	3,410,000	2013-11-04	
12	0040010010090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77,550	2013-09-16	
13	0060010030021	A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926,200	2013-09-16	
14	0060010030023	Adobe Dreamweaver CS6(한글버전)	Adobe Dreamweaver CS6(한글버전)	609,400	2013-09-16	
15	0040070020002	넷하드	LG Network Storage N2A3DF2		2013-07-23	
16	0020020000001	전자세단기	신도리코 TS-1630C	711,110	2012-12-03	
17	0040010070001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636,380	2012-12-03	
18	0040010070002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636,380	2012-12-03	
19	0040010070003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636,380	2012-12-03	
20	0040010070004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636,380	2012-12-03	
21	0040010070005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갤럭시노트 10.1 SHM-M480W	636,380	2012-12-03	
22	0040010080001	ASUS 넥서스 7	ASUS 넥서스 7	298,700	2012-12-03	
23	0040010080002	ASUS 넥서스 7	ASUS 넥서스 7	298,700	2012-12-03	
24	0040010060013	ipad mini WiFi 16GB Black	pad mini WiFi 16GB Black	396,867	2012-11-26	
25	0040010060014	ipad mini WiFi 16GB Black	pad mini WiFi 16GB Black	396,867	2012-11-26	
26	0040010060015	ipad mini WiFi 16GB Black	pad mini WiFi 16GB Black	396,867	2012-11-26	
27	0040010060016	ipad mini WiFi 16GB Black	pad mini WiFi 16GB Black	396,867	2012-11-26	
28	0040010010076	엘지 XPION	B55PV/AR5A11D	894,800	2012-04-16	
29	0040010010077	엘지 XPION	B55PV/AR5A11D	894,800	2012-04-16	
30	0040010010078	엘지 XPION	B55PV/AR5A11D	894,800	2012-04-16	
31	0040020010054	LG FLATRON	W2453V-PF	187,410	2012-04-16	
32	0040020010055	LG FLATRON	W2453V-PF	187,410	2012-04-16	
33	0040010010079	엘지 slimmest all-in-one	V300-LE40K	1,030,000	2012-03-23	
34	006001002001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	006001002001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	006001002001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	006001002002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	006001002002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9	006001002002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0	006001002002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1	006001002002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2	006001002002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43	006001002002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4	006001002002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5	006001002002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46	0060010010057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7	0060010010058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8	0060010010059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9	0060010010060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50	0060010010061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51	0060010010062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52	0060010010063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53	0060010010064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54	0040010010069	HP S5-1090KR	HP S5-1090KR	1,076,690	2011-09-28	
55	0040010010039	삼성 DM-V70/Q230G	인계전취득일 08.04.25	102,267	2011-02-28	
56	0040010010042	삼성 DM V200	인계전취득일 10.12.20	1,165,712	2011-02-28	
57	0040020010030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58	0040020010031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59	0040020010032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60	0040020010033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61	0040020010034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62	0040020010037	삼성 CX2032	인계전취득일 08.04.25	43,733	2011-02-28	
63	0040020010039	삼성 B2240	인계전취득일 10.12.20	300,000	2011-02-28	
64	0040020010040	삼성 B2240	인계전취득일 10.12.20	300,000	2011-02-28	
65	0030060020026	책상(—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30,331	2011-02-28	
66	0030060020027	책상(—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30,331	2011-02-28	
67	0030090010043	오픈캐비닛 3단	인계전취득일 08.05.15	19,215	2011-02-28	
68	0030090010044	오픈캐비닛 3단	인계전취득일 08.05.15	19,216	2011-02-28	
69	0030090010045	3단 캐비닛도어	인계전취득일 08.05.15	10,481	2011-02-28	
70	0030090010046	3단 캐비닛도어	인계전취득일 08.05.15	10,481	2011-02-28	
71	0030090010047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2	0030090010048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3	0030090010049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4	0030090010050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5	0030090010051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6	0030090010052	4단 캐비닛	인계전취득일 08.05.15	16,039	2011-02-28	
77	0040010020008	삼성 NT-Q45/Q210	인계전취득일 08.04.25	209,916	2011-02-28	
78	0040010020009	삼성 NT-Q45/Q210	인계전취득일 08.04.25	209,917	2011-02-28	
79	0040010020010	VGN-G35LNB	인계전취득일 09.11.16	860,498	2011-02-28	
80	0040050020003	디지털스 4024 A	인계전취득일 09.4.14	862,392	2011-02-28	
81	0050100010001	sun fire v445	인계전취득일 08.07.23	38,237,577	2011-02-28	
82	0050100030001	HP DL380 G5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3	0050100030002	HP DL380 G5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4	0050100040001	Brocade200E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5	0050100040002	Brocade200E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6	0050100060001	PMS U-2000L(10KVA)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7	0050100070001	SUN/EMC	인계전취득일 08.07.23		2011-02-28	
88	0050040000016	통합관리서버#(rta TruServer40, Intel Quad-Core X322)	UTM, UTM LogServer	11,622,528	2011-02-28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89	0050080000011	EMC CX3-10(8ea)	EMC CX3-10(8ea)	4,944,000	2011-02-28	
90	0050080000019	Eonstor ES-A08F-G2422-M2(8*1TB)	Eonstor ES-A08F-G2422-M2	11,206,400	2011-02-28	
91	0050040000019	데이터베이스(DB Insight SS30, DB Insight Manager ES)	DISG530, AIMNG ES	30,900,000	2011-02-28	
92	0060070000026	Able2Extract Pro V6(2개)	Able2Extract Pro V6(2개)	162,822	2011-02-28	
93	0060070000027	통계프로그램 NLOGIT 4.0	NLOGIT 4.0	677,370	2011-02-28	
94	0060070000028	Windows Server 2008	Windows Server 2008	555,740	2011-02-28	
95	0060070000029	백업솔루션 TimeNavigato	TimeNavigato	6,755,152	2011-02-28	
96	0060070000030	웹프린팅솔루션 PrintMade 서버용	PrintMade 서버용	15,780,692	2011-02-28	
97	0060070000031	차트 프로그램 SwiftChart	SwiftChart	473,220	2011-02-28	
98	0060070000032	UltraEdit(2개)	UltraEdit(2개)	117,780	2011-02-28	
99	0060070000033	DBMS[Oracle 10G(std)]	Oracle 10G(std)		2011-02-28	
100	0060070000034	DataCore SAN melody	DataCore SAN melody		2011-02-28	
101	0060070000035	DataCore SAN melody	DataCore SAN melody		2011-02-28	
102	0060070000036	검색엔진 Konan Docruzer	Konan Docruzer		2011-02-28	
103	0060070000037	WebTob 4.1	WebTob 4.1		2011-02-28	
104	0060070000038	미들웨어 S/W JEUS 6.0	JEUS 6.0		2011-02-28	
105	0060070000039	BIZenic 5.0(대용량메일발송)	BIZenic 5.0		2011-02-28	
106	0060070000040	OLAP 리포팅 툴 BI Matrix	BI Matrix		2011-02-28	
107	0060070000041	전자책 eCataloStudio2.3	eCataloStudio2.3		2011-02-28	
108	0060070000042	UIM Log SW Ahnlab TruGuard 로그서버 매니저	Ahnlab TruGuard 로그서버 매니저		2011-02-28	
109	0060070000043	WiseLog Premium Basic	WiseLog Premium Basic	2,459,536	2011-02-28	
110	0060070000044	한글 Adobe Acrobat 8.0(2개)	한글 Adobe Acrobat 8.0	109,502	2011-02-28	
111	0060070000045	STATA/SE10	STATA/SE10	327,707	2011-02-28	
112	0040020010013	LG(HP W1907)		300,000	2006-12-29	

□ 물품소재 미확인(미보유)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30000000001	선반	선반	100,000	2013-12-31	
2	0060070000051	파일업로더컴포넌트	DEXTUpload Pro Ver 3.5.6.0	430,000	2013-02-25	
3	0030000000002	벽시계	벽시계	70,000	2013-01-01	
4	0030000000003	벽시계	벽시계	70,000	2013-01-01	
5	0060070000058	에이전트라이센스	에이전트라이센스	20,000,000	2012-12-31	
6	0060070000059	에이전트라이센스	에이전트라이센스	20,000,000	2012-12-31	
7	0060070000055	통합모니터링솔루션 및 운영시스템	통합모니터링솔루션 및 운영시스템	15,600,000	2012-09-14	
8	0040020010053	LG FLATRON	W2453V-PF	187,410	2012-04-16	
9	0040050010002	신도리코 MF C3530n	신도리코 MF C3530n	900,000	2011-12-29	
10	0040010020014	LG XNOTE A510	LGA51	999,000	2011-12-28	
11	0040050010001	복합기 CLX-6250FXK	복합기 CLX-6250FXK	1,320,000	2011-12-28	
12	0010050000001	웅진케어스공기청정기 AP-1008CH	웅진케어스공기청정기 AP-1008CH	453,700	2011-07-22	
13	0040010060008	ipad2/A1395 32GB WIFI	ipad2/A1395 32GB WIFI	770,000	2011-06-28	
14	0040010060012	ipad2/A1395 32GB WIFI	ipad2/A1395 32GB WIFI	770,000	2011-06-28	
15	0040010020011	삼성전자 NT-X180-BABIE		744,360	2011-06-01	
16	0090070000001	인텔 E7500, 24인치 모니터	인텔 E7500, 24인치 모니터	1,144,000	2011-05-04	
17	0030010040002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TOS-701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 TOS-701	82,500	2011-05-03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8	0030010040003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TOS-701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 TOS-701	82,500	2011-05-03	
19	0030010040004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TOS-701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 TOS-701	82,500	2011-05-03	
20	0030010040005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TOS-701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 TOS-701	82,500	2011-05-03	
21	0030010040006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TOS-701	인테리어쇼파(1인)검정레자 TOS-701	82,500	2011-05-03	
22	0110010000001	앰프(120W) A120	앰프(120W) A120	360,000	2011-04-07	
23	0110040000002	Wireless Pin MIC WBT-F701	Wireless Pin MIC WBT-F701	240,000	2011-04-07	
24	0040020010027	삼성 CX943	인계전취득일 08.04.25	39,023	2011-02-28	
25	0030060020022	책상(L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43,829	2011-02-28	
26	0030060020023	책상(L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43,829	2011-02-28	
27	0030010010022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50	2011-02-28	
28	0030010010023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50	2011-02-28	
29	0030010010024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50	2011-02-28	
30	0030010010025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50	2011-02-28	
31	0030010010026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50	2011-02-28	
32	0030010010027	사원용의자(CH2800A)	인계전취득일 08.05.15	29,878	2011-02-28	
33	0030040010026	3단 서랍	인계전취득일 08.05.15	24,000	2011-02-28	
34	0030040010027	3단 서랍	인계전취득일 08.05.15	24,689	2011-02-28	
35	0060070000024	Adobe Production Primium 4.0	Adobe Production Primium 4.0	2,860,000	2009-05-27	
36	0040020010021	삼보 TGL-2200T		300,000	2008-12-24	
37	0040020010022	삼보 TGL-2200T		300,000	2008-12-24	
38	0040020010047	LG L1960TR	미디어제작장비에 포함		2007-06-25	
39	0040020010044	HP LP1965			2007-04-30	
40	0040010020007	LG X note		2,003,500	2006-12-29	
41	0060070000021	웹로 분석(Loginside TM eBIZ Education)	Loginside TM eBIZ Education	28,336,000	2006-12-29	
42	0030060020017	책상(—자형)		120,000	2006-05-27	
43	0030020010005	회의용테이블		120,000	2006-05-27	
44	0030020010006	회의용테이블		120,000	2006-05-27	
45	0030020010008	회의용테이블		120,000	2006-05-27	
46	0060070000020	V3 Pro 2004 Package(7개)	V3 Pro 2004 Package(7개)	301,000	2004-03-22	
47	0060070000019	Windows Xp Pro(DSP)외 7종	Windows Xp Pro(DSP)외 7종	4,516,700	2003-10-10	
48	0010070010001	캐논 G5		1,110,182	2003-09-04	
49	0040030010005	HP color 4600		3,136,818	2003-05-13	
50	0060070000014	사무용 S/W(ACDSee 4.0K)	ACDSee 4.0K	119,800	2002-12-31	
51	0060070000015	사무용 S/W(한글+PDF 5.0)	한글+PDF 5.0	355,000	2002-12-31	
52	0060070000016	사무용 S/W(H Visio std 2002)	H Visio std 2002	256,200	2002-12-31	
53	0060070000017	사무용 S/W(Norton Ghost 2002)	Norton Ghost 2002	56,600	2002-12-31	
54	0030020010001	회의용테이블(검정)		150,000	2002-12-27	
55	0060070000001	MS 오피스 2000	MS 오피스 2000	1,302,000	2002-12-24	
56	0060070000002	워드프로세서(한글97)	한글97	323,400	2002-12-24	
57	0060070000003	웹에디터(나모3.0)외 문서편집기	나모3.0	180,314	2002-12-24	
58	0060070000004	이미지가공툴(포토샵5.0)	포토샵5.0	800,000	2002-12-24	
59	0060070000005	개발툴(MS Visual C++ 6.0 Ent)	MS Visual C++ 6.0 Ent	1,500,000	2002-12-24	
60	0060070000006	웹서버(한글 Netscape Server)	한글 Netscape Server)	4,500,000	2002-12-24	
61	0060070000007	컴퓨터(VS 97 for internet:NT 4cpu)	V-S 97 for internet:NT 4 cpu	9,000,000	2002-12-24	
62	0060070000008	컴퓨터(VS 97 for internet:NT 2cpu)	V-S 97 for internet:NT 2 cpu	6,247,100	2002-12-24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63	006007000009	검색박스(V-S 97 for internet:NT 2cpu)	V-S 97 for internet:NT 2 cpu	6,247,100	2002-12-24	
64	006007000010	검색박스(V-S 97 for internet:unix 2cpu)	V-S 97 for internet:unix 2 cpu	12,000,000	2002-12-24	
65	006007000011	MS-SQL(한글 SQL sever 7.0)	한글 SQL sever 7.0	9,238,174	2002-12-24	
66	006007000012	MS-SQL(한글 SQL sever 7.0)	한글 SQL sever 7.0	9,238,174	2002-12-24	
67	006007000013	UniSQL for Unix(Engine 4.0)	Engine 4.0)	10,506,900	2002-12-24	

□ 2013년 물품 불용처리 후 관리대장 미삭제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40010010032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2	0040010010033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3	0040010010034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4	0040010010035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5	0040010010036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6	0040010010038	삼성 DM-V70/Q230G	삼성 DM-V70/Q230G	102,267	2011-02-28	
7	0040020010028	삼성 CX943	삼성 CX943	39,023	2011-02-28	

□ 물품 태그 미부착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40020030006	LG 빔프로젝터	PF1500	1,258,900	2015-12-17	
2	0040010010105	데스트톱 컴퓨터	VITO RMH-546	853,480	2015-11-09	
3	0040020030007	LG 빔프로젝터	BB650	1,699,120	2015-08-24	
4	0040010020030	LG 노트북	15Z950-MF50KN	1,377,400	2015-07-24	
5	0050010030001	삼성 갤럭시S6엣지	삼성 갤럭시 S6엣지	1,077,000	2015-05-14	
6	0030060020029	책상	책상	170,000	2015-02-12	
7	0030010010039	의자	의자	258,000	2015-02-12	
8	0030070030001	상부유리벨트블럭파티션 외2개	상부유리벨트블럭파티션 외2개	774,285	2015-02-12	
9	0030070010001	파티션(투톤) 외28개	파티션(투톤) 외28개	2,263,800	2015-02-12	
10	0030060040001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1	0030060020030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2	0030060020031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3	0030060020032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4	0030060020033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5	0030060020034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6	0030060020035	U형테이블	U형테이블	138,600	2015-02-12	
17	0030010010040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18	0030010010041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19	0030010010042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0	0030010010043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1	0030010010044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2	0030010010045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3	0030010010046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4	0030010010047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5	0030010010048	원탁의자	원탁의자	306,075	2015-02-12	
26	0040020010078	대우 모니터(텔레비전)	EF32D1BS	382,050	2014-11-07	
27	0050070000006	향온항습기(세원웰빙공조)	SW-A20U	27,528,500	2014-11-07	
28	0040010010098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75,220	2014-04-25	
29	0040010010099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75,220	2014-04-25	
30	0040010010100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75,220	2014-04-25	
31	0040010010101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76,260	2014-04-25	
32	0040020010075	LG전자 모니터	CN/EX241	290,000	2014-04-25	
33	0050070000005	향온항습기(세원웰빙공조)	SW-A10U	13,636,590	2014-04-03	
34	0040020010067	LG전자 모니터(27')	27EA53VQ		2013-12-31	
35	0030010020035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36	0030010020036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37	0030010020037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38	0030010020038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39	0030010020039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0	0030010020040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1	0030010020041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2	0030010020042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3	0030010020043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4	0030010020044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5	0030010020045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6	0030010020046	회의실의자	매쉬의자		2013-12-01	
47	0040010010095	엘지B75PS(core-i5)	B75PS.AR5M10D	881,380	2013-11-05	
48	0040070030001	신일 대형선풍기	SIF-30LBG 스탠드	124,300	2013-09-26	
49	0040070030002	신일 대형선풍기	SIF-30LBG 스탠드	124,300	2013-09-26	
50	0030010010037	사원용 의자	TOMESH-GOLD	252,290	2013-04-18	
51	0030010010038	임원용 의자	PREMIUM	602,070	2013-04-18	
52	0040010010097	HP Pavilion S5	HP Pavilion S5	887,000	2013-01-04	
53	0040020010072	LG전자 모니터(24')	E2442V	301,000	2013-01-04	
54	0020020000004	전자세단기	문서파쇄기	711,110	2012-12-03	
55	0030020010011	회의용 원탁	회의용 원탁	120,000	2012-11-30	
56	0030040010028	2단 서랍		125,000	2012-11-30	
57	0030040010029	2단 서랍	스틸분체도장	125,000	2012-11-30	
58	0030010010030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59	0030010010031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0	0030010010032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1	0030010010033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2	0030010010034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3	0030010010035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4	0030010010036	접의식의자		28,000	2012-11-30	
65	0030010020033	회의용의자		90,000	2012-11-30	
66	0030010020034	회의용의자		90,000	2012-11-30	
67	0040010010080	DELL컴퓨터	INSPIRON 660S	880,000	2012-08-02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68	0040010060010	New IPAD/16GB WIFI	New IPAD/16GB WIFI	586,820	2012-06-15	
69	0040010060011	New IPAD/16GB WIFI	New IPAD/16GB WIFI	586,820	2012-06-15	
70	0040010010070	엘지 XPION	B55PV/AR5A11D	894,850	2012-04-16	
71	0040010010074	엘지 XPION	B55PV/AR5A11D	894,800	2012-04-16	
72	0050070000003	HT-A10GG3(센츄리)	HT-A10GG3(센츄리)	9,000,000	2011-12-31	
73	0090010000001	녹음부스(주문형)	녹음부스(주문형)	9,900,000	2011-05-04	
74	0030020030001	테이블(녹음부스내)	테이블(녹음부스내)	121,000	2011-05-04	
75	0030060020024	책상(—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30,331	2011-02-28	
76	0030060020025	책상(—형 책상)	인계전취득일 08.05.15	30,331	2011-02-28	
77	0050120000002	HCFC Blend A Package(마스텍코) 캐비닛형	HCFC Blend A Package(마스텍코)	4,000,000	2010-12-31	
78	0070010000002	SM5(52L-8379)	2007.1.18(1998cc)	5,749,000	2010-01-21	
79	0050070000002	향온함습기(서버실)		15,500,000	2008-12-26	
80	0050070000004	향온함습기(서버실)	SAC-100AU	15,500,000	2008-12-26	
81	0040010010047	삼보 DREAMSYS-EMWT		826,000	2008-12-24	
82	0030060020018	책상(ㄱ자형)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3	0030060020019	책상(ㄱ자형)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4	0030010010017	사원용 의자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5	0030010010018	사원용 의자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6	0030010010019	사원용 의자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7	0030010010020	사원용 의자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8	0030010010021	사원용 의자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89	0030010010001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0	0030010010005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1	0030010010006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2	0030010010009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3	0030010010010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4	0030010010011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5	0030010010012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6	0030010010015	사원용 의자		158,400	2006-09-04	
97	0050120000001	HCFC Blend A Package(마스텍코)	HCFC Blend A Package(마스텍코)	4,587,000	2005-12-31	
98	0010010010001	SVR80(범양공조)	SVR80(범양공조)	5,200,000	2005-12-31	
99	0030010020001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0	0030010020002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1	0030010020003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2	0030010020004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3	0030010020005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4	0030010020006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5	0030010020011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6	0030010020013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7	0030010020014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8	0030010020015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09	0030010020018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110	0030010020019	회의용의자		150,000	2002-12-27	

□ 물품 태그 오류

(단위 : 36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30080020007	사이드장	사이드장	138,000	2015-02-12	
2	0030090010062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12-29	
3	0030090010063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12-29	
4	0030090010064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12-29	
5	0030090010065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12-29	
6	0030090010053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09-15	
7	0030090010054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09-15	
8	0030090010055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09-15	
9	0030090010056	3단캐비닛	3단캐비닛	262,900	2014-09-15	
10	0030090010057	2단캐비닛	2단캐비닛	223,300	2014-09-15	
11	0030090010058	2단캐비닛	2단캐비닛	223,300	2014-09-15	
12	0030090010059	2단캐비닛	2단캐비닛	223,300	2014-09-15	
13	0030090010060	2단캐비닛	2단캐비닛	223,300	2014-09-15	
14	0030090010061	2단캐비닛	2단캐비닛	223,300	2014-09-15	
15	0030050000001	옷장	옷장	155,000	2012-11-30	
16	0030080000001	수납장 주문 파스텔장	수납장 주문 파스텔장	165,000	2011-07-26	
17	0030080000002	수납장 주문 파스텔장	수납장 주문 파스텔장	165,000	2011-07-26	
18	0030060020020	책상(ㄴ자형)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19	0030060020021	책상(ㄴ자형)	인테리어공사비용내 포함		2007-06-26	
20	0030090010033	책장(오픈 중)		120,000	2003-05-26	
21	0030090010038	책장(오픈 소)		120,000	2003-05-26	
22	0030060020004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3	0030060020005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4	0030060020006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5	0030060020007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6	0030060020008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7	0030060020009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8	0030060020011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29	0030060020012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30	0030060020013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31	0030060020014	책상(ㄴ자형)		150,000	2002-12-27	
32	0030040010001	서랍장(이동식)		150,000	2002-12-27	
33	0030040010006	서랍장(이동식)		150,000	2002-12-27	
34	0030040010008	서랍장(이동식)		150,000	2002-12-27	
35	0030090010012	책장(오픈 중)		150,000	2002-12-27	
36	0030090010019	책장(오픈 중)		150,000	2002-12-27	

□ 물품 태그 부착 불가 품목(바코드 미관리)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80080000029	캐논카메라	Canon XC10	2,460,000	2016-07-27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	008008000030	특수촬영장비	CAMTOOL ALPHABEAM	1,690,000	2016-07-27	
3	008003000022	외장 마이크	RODE STEREO VIDEO MIC PRO	332,000	2016-07-27	
4	008008000031	중계용 소니카메라	SONY PXW-FS5	6,650,000	2016-07-27	
5	008009000001	메타본즈렌즈	메타본즈CanonEFtoEmountSpeedBoosterULTRA	1,030,000	2016-07-27	
6	008010000001	중계촬영전송케이블	Canare 3S-DI(HD)3 플렉시블 75옴 BNC케이블(100m 릴통추가)	565,000	2016-07-27	
7	008011000001	중계용 모니터 장비	TV-LOGIC LVM-170A	1,640,000	2016-07-27	
8	008011000002	중계용 모니터 케이스	CARRYING CASE FOR LVM-170A	235,000	2016-07-27	
9	008008000032	특수촬영장비(스케이터)	EdeikronePOCKETSKATER2	445,000	2016-07-27	
10	008005000020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MANFROTTO CC-191PL)	105,000	2016-07-27	
11	008005000021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MANFROTTO CC-191PL)	105,000	2016-07-27	
12	008012000001	소니 배터리	Sony BP-U60	330,000	2016-07-27	
13	008012000002	샌디스크 메모리	SANDISK EXTREME PRO 64GB UHS-II	58,000	2016-07-27	
14	008012000003	샌디스크 메모리	SANDISK EXTREME PRO 64GB UHS-II	58,000	2016-07-27	
15	008012000004	캐논 배터리	CANON-LP-E6P	61,000	2016-07-27	
16	0060070000162	시스템관리솔루션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2,561,940	2016-06-24	
17	0060070000163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1	1,240,000	2016-06-24	
18	0060070000164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1	1,240,000	2016-06-24	
19	0060070000165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1	1,240,000	2016-06-24	
20	0060070000166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1	0060070000167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2	0060070000168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3	0060070000169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4	0060070000170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5	0060070000171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6	0060070000172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7	0060070000173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8	0060070000174	DBMS관리솔루션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3,040,000	2016-06-24	
29	0060070000175	설비관리(FMS)솔루션	WatchAll Facility Manager	12,480,000	2016-06-24	
30	0060070000176	시스템관리솔루션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2,280,000	2016-06-24	
31	0060070000177	시스템관리솔루션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2,280,000	2016-06-24	
32	0060070000178	시스템관리솔루션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2,280,000	2016-06-24	
33	0060070000179	시스템관리솔루션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2,280,000	2016-06-24	
34	0060070000072	개인정보솔루션	WebFilter W2000 2.0	18,100,000	2016-06-15	
35	0060070000073	개인정보솔루션	WebFilter W3000 2.0	27,934,950	2016-06-15	
36	0060070000074	개인정보솔루션	ServerFilterv1.0	14,071,820	2016-06-15	
37	0060070000075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335,980	2016-06-15	
38	0060070000076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2000 Server	22,900,000	2016-06-15	
39	0060070000077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1,047,220	2016-06-15	
40	0060070000078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1000	11,880,000	2016-06-15	
41	0060070000079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2	0060070000080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3	0060070000081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4	0060070000082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5	0060070000083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6	0060070000084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47	0060070000085	접근제어솔루션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100,000	2016-06-15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94	0060070000132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95	0060070000133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96	0060070000134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97	0060070000135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98	0060070000136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99	0060070000137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0	0060070000138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1	0060070000139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2	0060070000140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3	0060070000141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4	0060070000142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5	0060070000143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6	0060070000144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7	0060070000145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8	0060070000146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09	0060070000147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0	0060070000148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1	0060070000149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2	0060070000150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3	0060070000151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4	0060070000152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5	0060070000153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6	0060070000154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7	0060070000155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8	0060070000156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19	0060070000157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20	0060070000158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21	0060070000159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22	0060070000160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23	0060070000161	패스워드관리솔루션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742,500	2016-06-15	
124	0060030010003	NAS(Network Attach Storage)	EFM ipTIME NAS4(24TB)	1,236,350	2016-03-21	
125	0060030010001	문화정보통합센터 원격지 백업	Databrain, 백업기능, 백업속도, 복구기능, 라이선스등	65,090,000	2016-02-01	
126	0060030010002	문화정보통합센터 원격지 백업	조달승인Databrain, 백업기능, 백업속도, 복구기능, 라이선스등	661,630	2016-01-29	
127	0060070000065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NEO BIZBOX 고도화	15,000,000	2015-12-31	
128	0060070000066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SMS Agent for Windows Class1(8식)	9,965,800	2015-12-28	
129	0060070000067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SMS Agent for Windows Class1(8식)	10,010,520	2015-12-28	
130	0060070000068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1(20식)	24,970,400	2015-12-28	
131	0060070000069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Framework(1식)	15,558,480	2015-12-28	
132	0060070000070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SMS Agent for Unix Class1(5식)	12,965,400	2015-12-28	
133	0060070000071	모니터링시스템	WatchAll 10 Network Agent Class3	36,495,200	2015-12-28	
134	0050050000008	UPS배터리	무누액밀폐형 축전지(20개)	10,670,000	2015-11-08	
135	0060040020001	윤소호2012통합본	윤소호2012통합본	990,000	2015-08-03	
136	0060000000001	ERwin Data Modeler Navigator Edition r9.6	ERwin Data Modeler Navigator Edition r9.6	3,630,000	2015-07-31	
137	0060000000002	Microsoft Project 2013		649,000	2015-07-31	
138	0080060000004	조명장비	고다드 보급형 디지털 400W STUDIO-5	1,718,000	2015-07-08	
139	0110040000004	무선마이크	촬영용 무선마이크(Zoom H4N SP)	510,000	2015-07-08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40	0110040000005	무선마이크	회의실용 무선마이크(SHURE SM24/ P358)	300,000	2015-07-08	
141	0010070010005	SONY 카메라	Sony PXW-X160	4,770,000	2015-05-20	
142	0080040000023	삼각대	맨프로토크MBFRA4-BHbefree	205,000	2015-05-20	
143	0080040000024	이동촬영 삼각대	LANPARTE SCR-01	1,500,000	2015-05-20	
144	0080080000023	헬리캠	INSPIRE 1(Dual)	3,590,000	2015-05-20	
145	0080080000024	배터리	TB48 Battery(5700mAh)	210,000	2015-05-20	
146	0080080000025	삼각대	1345 Self-tightening Props	40,000	2015-05-20	
147	0080080000026	모니터	7인치 모니터	240,000	2015-05-20	
148	0060070000064	편집프로그램	Compressor 4, Motion 5	121,800	2015-05-20	
149	0080080000028	촬영용 렌즈	CANON 16-35MM	1,800,000	2015-05-20	
150	0050050000006	HiPERI-9300-100K	HiPERI-9300-100K	23,520,040	2014-12-24	
151	0060020000013	통합검색솔루션	Mariner4 라이선스	30,000,000	2014-12-17	
152	0080060000002	MegaLED FL700Eb	MegaLED FL700Eb	800,000	2014-12-17	
153	0080060000003	MegaLED FL700Eb	MegaLED FL700Eb	800,000	2014-12-17	
154	0080020000001	스위치	ATEM TELEVISION STUDIO	1,180,000	2014-12-17	
155	0080020000002	컨트롤러	LIVE COMMAND	1,100,000	2014-12-17	
156	0080020000003	캡처장비	ULTRASTUDIO EXPRESS(케이블포함)	997,000	2014-12-17	
157	0060070000063	편집프로그램	Wirecast 6 for Mac 라이선스	1,123,000	2014-12-17	
158	0050040000033	서버 DELL R420	서버 DELL R420	5,000,000	2014-11-21	
159	0050040000034	서버 DELL R420	서버 DELL R420	5,000,000	2014-11-21	
160	0060020000010	웹클롤러	i-spoder 4	15,000,000	2014-11-21	
161	0060020000011	웹클롤러	i-spoder 4	15,000,000	2014-11-21	
162	0060020000012	카테고리 분류기	DGCAT	10,000,000	2014-11-21	
163	0050080000032	FAS2240(NETAPP)	FAS2240(NETAPP)	27,500,000	2014-11-19	
164	0060020000001	OASIS	OASIS 에이전트	9,500,000	2014-11-17	
165	0060020000002	OASIS	OASIS 에이전트	9,500,000	2014-11-17	
166	0060020000003	OASIS	OASIS 에이전트	9,500,000	2014-11-17	
167	0060020000004	OASIS	OASIS 에이전트	9,500,000	2014-11-17	
168	0060020000005	OASIS	OASIS 에이전트	9,500,000	2014-11-17	
169	0050060000004	CDP(Falcon)	Falconstor CDP 10TB	44,000,000	2014-10-31	
170	0060020000006	OASIS	OASIS 에이전트	5,000,000	2014-10-06	
171	0060020000007	OASIS	OASIS 에이전트	5,000,000	2014-10-06	
172	0060020000008	OASIS	OASIS 에이전트	5,000,000	2014-10-06	
173	0060020000009	OASIS	OASIS 에이전트	5,000,000	2014-10-06	
174	0060070000052	VMware vSpjere 5	VMware vSpjere 5 Enterprise	26,000,000	2014-06-20	
175	0060010020091	한글2014	한글2014	173,410	2014-06-20	
176	0050040000031	서버 DELL R720	서버 DELL R720	14,500,000	2014-06-20	
177	0050040000032	서버 DELL R720	서버 DELL R720	14,500,000	2014-06-20	
178	0050080000033	FAS3220(NETAPP)	FAS3220A SAS 54TB(NETAPP)	121,000,000	2014-06-20	
179	0050030100005	SAN스위치	Brocade BR-300용	4,120,780	2014-06-20	
180	0050030100006	SAN스위치	Brocade BR-300용	4,120,780	2014-06-20	
181	0050080000034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182	0050080000035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183	0050080000036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184	0050080000037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185	0050080000038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86	0050080000039	외장형 스토리지	FAS2020용 HDD	1,650,000	2014-06-20	
187	0050080000040	외장형 스토리지	FAS2040용 HDD	1,650,000	2014-06-20	
188	0050080000041	백업 스토리지	DS4243용 HDD	3,800,000	2014-06-20	
189	0060070000061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NEO BIZBOX	26,840,000	2014-04-29	
190	0060010020087	한글2014	한글2014	173,410	2014-04-25	
191	0060010020088	한글2014	한글2014	173,410	2014-04-25	
192	0060010020089	한글2014	한글2014	173,410	2014-04-25	
193	0060010020090	한글2014	한글2014	173,410	2014-04-25	
194	0060010010083	MS-OFFICE	MS-OFFICE 2013	350,800	2014-04-25	
195	0060010010084	MS-OFFICE	MS-OFFICE 2013	350,800	2014-04-25	
196	0060010010085	MS-OFFICE	MS-OFFICE 2013	350,810	2014-04-25	
197	0060010010086	MS-OFFICE	MS-OFFICE 2013	350,800	2014-04-25	
198	0060070000060	예산회계인사관리 소프트웨어	더존I CUBE-G20	19,536,000	2014-04-04	
199	0050050000005	YESP-3500(에스파워)	YESP-3500 (에스파워)	25,765,500	2014-04-03	
200	0080080000013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200,000	2014-03-14	
201	0080080000014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200,000	2014-03-14	
202	0080080000015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200,000	2014-03-14	
203	0080040000019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4-03-14	
204	0080040000020	삼각대	E-IMAGE EG03A2	258,000	2014-03-14	
205	0080040000021	삼각대	E-IMAGE EG03A2	258,000	2014-03-14	
206	0080030000019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WP-V1	519,000	2014-03-14	
207	0080030000020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WP-V1	519,000	2014-03-14	
208	0080030000021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WP-V1	519,000	2014-03-14	
209	0080050000017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PL)	122,000	2014-03-14	
210	0080050000018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PL)	122,000	2014-03-14	
211	0080050000019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PL)	122,000	2014-03-14	
212	0080080000016	캐논카메라	CANON 5D mark3	3,900,000	2014-03-14	
213	0080080000017	촬영용 렌즈	CANON EF724-105MM	1,094,000	2014-03-14	
214	0080080000018	촬영용 렌즈	삼양옵틱스 8mm	393,000	2014-03-14	
215	0080040000022	모노포드	MONOPOD E-IMAGE	219,000	2014-03-14	
216	0060010030022	A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2013-12-31	
217	0050040000021	서버 HP DL380p Gen8	서버 HP DL380p Gen8		2013-12-31	
218	0050030110005	SZ-2000DT(LG엔시스)	SZ-2000DT(LG엔시스)	40,000,000	2013-12-17	
219	0050030110006	MF2 2000(SECU1)	MF2 2000(SECU1)	40,000,000	2013-12-17	
220	0050030110007	IPS NE2000(WINSTECH)	IPS NE2000(WINSTECH)	40,000,000	2013-12-17	
221	0050030110008	WAF NS2000(WINSTECH)	WAF NS2000(WINSTECH)	30,000,000	2013-12-17	
222	0050030100003	Alteon 3408E(L4) (Netel)	Alteon 3408E(L4) (Netel)	1,459,000	2013-12-17	
223	0050030100004	Alteon 3408E(L4) (Netel)	Alteon 3408E(L4) (Netel)	1,459,000	2013-12-17	
224	0050030100001	보조스위치	Netel Alteon Swich 3408E	3,245,000	2013-11-21	
225	0050030100002	보조스위치	Netel Alteon Swich 3408E	3,245,000	2013-11-21	
226	0060010030030	전자결재 라이선스	전자결재 라이선스	94,000	2013-11-20	
227	0060010030031	전자결재 라이선스	전자결재 라이선스	94,000	2013-11-20	
228	0060010030032	전자결재 라이선스	전자결재 라이선스	94,000	2013-11-20	
229	0060010010071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11-05	
230	0060010010072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11-05	
231	0060010010073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11-05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32	0060010010074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11-05	
233	0060010020075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11-05	
234	0060010020076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11-05	
235	0060010020077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11-05	
236	0060010020078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11-05	
237	0060010030024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38	0060010030025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39	0060010030026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40	0060010030027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41	0060010030028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42	0060010030029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3-09-26	
243	0060010010065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4	0060010010066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5	0060010010067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6	0060010010068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7	0060010010069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8	0060010010070	MS-OFFICE	MS-OFFICE 2013	348,920	2013-09-16	
249	0060010020069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0	0060010020070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1	0060010020071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2	0060010020072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3	0060010020073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4	0060010020074	한글2010 SE+	한글2010 SE+	118,000	2013-09-16	
255	0060010030020	A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Adobe Photoshop CS6(한글버전)	926,200	2013-09-16	
256	0080030000018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40,000	2013-08-12	
257	0080080000012	소니 촬영용 카메라	SONY HXR-NX70N	3,350,000	2013-08-12	
258	0080040000018	삼각대	LIBEC TH-650DV	210,000	2013-08-12	
259	0080050000016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LOWPRO X350 AW)	245,000	2013-08-12	
260	0080060000001	SLIDECAM	VARAVON SLIDECAM ITE 800	252,000	2013-08-12	
261	0080080000011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488,000	2013-04-10	
262	0080040000015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3-04-10	
263	0080040000016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3-04-10	
264	0080040000017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3-04-10	
265	0080050000011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1PL)	107,000	2013-04-10	
266	0080050000012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1PL)	107,000	2013-04-10	
267	0080050000013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1PL)	107,000	2013-04-10	
268	0080050000014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MB SB390 5BBL)	112,000	2013-04-10	
269	0080050000015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MB SB390 5BBL)	112,000	2013-04-10	
270	0080030000015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35,000	2013-04-10	
271	0080030000016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35,000	2013-04-10	
272	0080030000017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35,000	2013-04-10	
273	0050030110003	MF2 2000(SECU1)	MF2 2000(SECU1)	37,800,000	2012-12-31	
274	0050030110004	IPS NE2000(WINSTECH)	IPS NE2000(WINSTECH)	39,600,000	2012-12-31	
275	0050080000028	DS4243(NETAPP)	DS4243(NETAPP)	17,600,000	2012-12-31	
276	0050080000029	DS4243(NETAPP)	DS4243(NETAPP)	17,600,000	2012-12-31	
277	0050080000030	DS4243(NETAPP)	DS4243(NETAPP)	17,600,000	2012-12-31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78	0050080000031	FAS2040(NETAPP)	FAS2040(NETAPP)	28,000,000	2012-12-31	
279	0050050000004	YESP-3500(에스파워)	YESP-3500(에스파워)	26,400,000	2012-12-31	
280	0060070000057	관리프로그램(2개)	관리프로그램(2개)	5,060,000	2012-12-31	
281	0080040000013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2-12-26	
282	0080040000014	삼각대	LIBEC TH-650DV	200,000	2012-12-26	
283	0080080000004	촬영용 렌즈	CANON EF70-200MM F/2.8	3,118,000	2012-12-26	
284	0080080000005	소니카메라	SONY HXR-NX5N	5,460,000	2012-12-26	
285	0080080000006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360,000	2012-12-26	
286	0080080000007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360,000	2012-12-26	
287	0080080000008	소니카메라	SONY HXR-NX70N	3,360,000	2012-12-26	
288	0080030000013	소니 무선마이크	SONY UMP-V1(898)	516,000	2012-12-26	
289	0080080000009	Light arm(지미집)	지미집모니터FM-050포함	1,010,000	2012-12-26	
290	0080080000010	슬더그립(DSLR)	슬더그립SK-R01	122,000	2012-12-26	
291	0060070000056	동영상변환솔루션	동영상변환솔루션	15,000,000	2012-12-24	
292	0060070000054	Repia Search Server	Repia Search Server/S1010 v3.5	24,700,000	2012-11-29	
293	0060010030001	Production Premium CS6 6.0 MP(한글버전)	Production Premium CS6 6.0 MP A00(한글버전)	2,360,600	2012-08-01	
294	0080010020002	소니 촬영용 캡코더	소니 HXR-NX70N	3,300,000	2012-07-25	
295	0060070000053	KISS-OASIS	KISS-OASIS 1.0	200,000,000	2012-06-08	
296	0060010030033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2-04-06	
297	0060010030034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2-04-06	
298	0060010030035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2-04-06	
299	0060010030036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2-04-06	
300	0060010030037	전자결제 라이선스	전자결제 라이선스	94,000	2012-04-06	
301	0060010010075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2	0060010010076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3	0060010010077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4	0060010010078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5	0060010010079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6	0060010010080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7	0060010010081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8	0060010010082	MS-OFFICE	MS-OFFICE 2010	227,220	2012-04-03	
309	0060010020079	한글2010	한글2010	99,560	2012-04-03	
310	0060010020080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1	0060010020081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2	0060010020082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3	0060010020083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4	0060010020084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5	0060010020085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6	0060010020086	한글2010	한글2010	99,530	2012-04-03	
317	0080080000001	소니 촬영용 카메라	SONY HXR-NX70N	3,496,000	2012-03-28	
318	0080080000002	소니 촬영용 카메라	SONY HXR-NX70N	3,496,000	2012-03-28	
319	0080080000003	소니 촬영용 카메라	SONY HXR-NX70N	3,496,000	2012-03-28	
320	0080040000010	소니 촬영용 삼각대	소니 VCT-1170RM	466,000	2012-03-28	
321	0080040000011	소니 촬영용 삼각대	소니 VCT-1170RM	466,000	2012-03-28	
322	0080040000012	소니 촬영용 삼각대	소니 VCT-1170RM	466,000	2012-03-28	
323	0080050000008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	120,000	2012-03-28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324	008005000009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	120,000	2012-03-28	
325	008005000010	촬영용 카메라 가방	가방(KATA CC192)	120,000	2012-03-28	
326	008003000010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46,000	2012-03-28	
327	008003000011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46,000	2012-03-28	
328	008003000012	촬영용 무선마이크	SONY UMP-V1	546,000	2012-03-28	
329	005006000003	CDP(Falcon)	CDP(Falcon)	34,000,000	2011-12-31	
330	005008000025	EN-2126JS3H-NQX(PROWQRE)	EN-2126JS3H-NQX(PROWQRE)	14,993,000	2011-12-31	
331	005008000026	FAS2020(NETAPP)	FAS2020(NETAPP)	14,000,000	2011-12-31	
332	005008000027	DS14MK2	DS14MK2	15,950,000	2011-12-31	
333	005003000009	3CRBSG5293(3COM)	3CRBSG5293(3COM)	2,000,000	2011-12-31	
334	005003000010	Brocade 300(Brocade)	Brocade 300(Brocade)	7,600,000	2011-12-31	
335	005008000020	EN-3166JS3H-NQX(1TB*16EA, 7,200 RPM)	EN-3166JS3H-NQX(1TB*16EA, 7,200 RPM)	14,293,000	2011-12-30	
336	0050030060001	서버 랙(19" Sever Rack 40U)	서버 랙(19" Sever Rack 40U)	700,000	2011-12-30	
337	0060030020003	Window7	Window7	363,000	2011-12-30	
338	0050080000021	FAS2020(1TB*14EA, 7,200 RPM)	FAS2020(1TB*14EA, 7,200 RPM)	15,950,000	2011-12-30	
339	0050040000020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1-12-30	
340	0060070000050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Ware vShield Edge 25 VM Pack)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Ware vShield Edge 25 VM Pack)	26,818,182	2011-12-30	
341	0050040000028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1-12-30	
342	0050040000029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1-12-30	
343	0050040000030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1-12-30	
344	006001002002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45	006001002003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46	006001002003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47	006001002003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48	006001002003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49	006001002003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0	006001002003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1	006001002003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2	006001002003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3	006001002003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4	006001002003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5	006001002004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6	006001002004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7	006001002004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8	006001002004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59	006001002004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0	006001002004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1	006001002004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2	006001002004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3	006001002004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4	006001002004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5	006001002005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6	006001002005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7	006001002005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8	006001002005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69	006001002005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370	006001002005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1	006001002005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2	006001002005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3	006001002005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4	006001002005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5	006001002006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6	006001002006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7	006001002006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8	006001002006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79	006001002006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0	006001002006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1	006001002006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2	006001002006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3	006001002006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12-29	
384	0010070010004	캐논 EOS5D MARK2	본체(EOS5D), 렌즈(EF24-70mm), 마이크(at0944) 등	5,858,600	2011-12-29	
385	0080030000008	SONY UWP-V1		576,000	2011-12-29	
386	0080030000009	SONY UWP-V1		576,000	2011-12-29	
387	0080060010002	플래쉬 led 144w	플래쉬 led 144w	163,000	2011-12-29	
388	0060010010017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89	0060010010018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0	0060010010019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1	0060010010020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2	0060010010021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3	0060010010022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4	0060010010023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5	0060010010024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6	0060010010025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7	0060010010026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8	0060010010027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399	0060010010028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0	0060010010029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1	0060010010030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2	0060010010031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3	0060010010032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4	0060010010033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5	0060010010034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6	0060010010035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7	0060010010036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8	0060010010037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09	0060010010038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0	0060010010039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1	0060010010040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2	0060010010041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3	0060010010042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4	0060010010043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5	0060010010044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416	0060010010045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7	0060010010046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8	0060010010047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19	0060010010048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0	0060010010049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1	0060010010050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2	0060010010051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3	0060010010052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4	0060010010053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5	0060010010054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6	0060010010055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7	0060010010056	MS-OFFICE	MS-OFFICE	226,000	2011-12-28	
428	0060060010001	Plus 고정자산관리-기본형	UbiPlus 고정자산관리-기본형	550,000	2011-08-10	
429	0080010000003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1,750,000	2011-05-24	
430	0080010000004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1,750,000	2011-05-24	
431	0080010000005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방송용 VCR(촬영장비) SONY GV-HD700	1,750,000	2011-05-24	
432	0080010000006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2,644,760	2011-05-24	
433	0080010000007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2,644,760	2011-05-24	
434	0080010000008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2,644,760	2011-05-24	
435	0080010000009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2,644,760	2011-05-24	
436	0080010000010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방송용 캠코더(SONY HVR-A1N)	2,644,760	2011-05-24	
437	0080040000006	삼각대(SONY VCT-1170RM)	삼각대(SONY VCT-1170RM)	637,500	2011-05-24	
438	0080040000007	삼각대(SONY VCT-1170RM)	삼각대(SONY VCT-1170RM)	637,500	2011-05-24	
439	0080040000008	삼각대(SONY VCT-1170RM)	삼각대(SONY VCT-1170RM)	637,500	2011-05-24	
440	0080040000009	삼각대(SONY VCT-1170RM)	삼각대(SONY VCT-1170RM)	637,500	2011-05-24	
441	0080030000005	SONY UMP-V1		733,400	2011-05-24	
442	0080030000006	SONY UMP-V1		733,400	2011-05-24	
443	0080030000007	SONY UMP-V1		733,400	2011-05-24	
444	0080050000001	가방(KATA CB400)	가방(KATA CB400)	280,000	2011-05-24	
445	0080050000002	가방(KATA CB400)	가방(KATA CB400)	280,000	2011-05-24	
446	0080050000003	가방(KATA CC193)	가방(KATA CC193)	168,000	2011-05-24	
447	0080050000004	가방(KATA CC193)	가방(KATA CC193)	168,000	2011-05-24	
448	0080050000005	가방(KATA CC193)	가방(KATA CC193)	168,000	2011-05-24	
449	0080050000006	가방(KATA CC193)	가방(KATA CC193)	168,000	2011-05-24	
450	0080050000007	가방(KATA CC193)	가방(KATA CC193)	168,000	2011-05-24	
451	0060010030003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2	0060010030004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3	0060010030005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4	0060010030006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5	0060010030007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6	0060010030008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7	0060010030009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8	0060010030010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59	0060010030011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0	0060010030012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1	0060010030013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462	0060010030014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3	0060010030015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4	0060010030016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5	0060010030017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6	0060010030018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7	0060010030019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980,000	2011-05-24	
468	0060010030002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Adobe CS5 Production Premium(한글버전)	1,870,000	2011-05-06	
469	0060030020001	Window7	Window7	291,500	2011-05-06	
470	0060030020002	Window7	Window7	291,500	2011-05-06	
471	0090020000001	야마하 MW12C	야마하 MW12C	671,000	2011-05-04	
472	0090030000001	CAD E300	CAD E300	759,000	2011-05-04	
473	0090040000001	SAMSON PS01	SAMSON PS01	43,120	2011-05-04	
474	0090050000001	aAMSON MB1	SAMSON MB1	48,400	2011-05-04	
475	0090060000001	젠하이저 HD465	젠하이저 HD465	126,500	2011-05-04	
476	006001002000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77	006001002000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78	006001002000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79	006001002000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0	006001002000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1	006001002000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2	0060010020007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3	0060010020008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4	0060010020009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5	0060010020010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6	0060010020011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7	0060010020012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8	0060010020013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89	0060010020014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90	0060010020015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91	0060010020016	한글2010	한글2010	99,000	2011-04-22	
492	0060010010007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3	0060010010008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4	0060010010009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5	0060010010010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6	0060010010011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7	0060010010012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8	0060010010013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499	0060010010014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500	0060010010015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501	0060010010016	MS-OFFICE	MS-OFFICE	236,700	2011-04-02	
502	0060070000046	VMware Advanced	VMware Advanced	6,578,000	2011-03-16	
503	0060070000047	VMware Advanced	VMware Advanced	6,578,000	2011-03-16	
504	0060070000048	VMware Advanced	VMware Advanced	6,578,000	2011-03-16	
505	0060070000049	VMware Advanced	VMware Advanced	6,578,000	2011-03-16	
506	0050100070002	SUN/EMC	인계전취득일 08.07.23	0	2011-02-28	
507	0050050000003	UPS(PMS U-2000L)	인계전취득일 08.08.18	1,242,467	2011-02-28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508	0050040000017	개발서버(Dell CN/Power Edge R300)	Dell CN/Power Edge R300	998,171	2011-02-28	
509	0050040000018	백업서버(IBM X3650M2)	IBM X3650M2	4,405,928	2011-02-28	
510	0050050000007	UPS(PMS U-2000L)	HiPERI-9300	6,500,000	2011-02-28	
511	0100010000001	문화정보화 교육장설/설비 공사	문화정보화 교육장 시설/설비 공사	21,438,180	2011-02-21	
512	0050080000024	FAS2040(NETAPP)	FAS2040(NETAPP)	64,900,000	2010-12-31	
513	0050030000003	2960 G(Cisco)	2960 G(Cisco)	2,470,000	2010-12-31	
514	0050030000004	2960 G(Cisco)	2960 G(Cisco)	2,470,000	2010-12-31	
515	0050030000005	3CBLSG48(3COM)	3CBLSG48(3COM)	500,000	2010-12-31	
516	0050030000006	3CBLSG48(3COM)	3CBLSG48(3COM)	500,000	2010-12-31	
517	0050030000007	3CR17333(3COM)	3CR17333(3COM)	1,000,000	2010-12-31	
518	0050030000008	Brocade 300(Brocade)	Brocade 300(Brocade)	8,800,000	2010-12-31	
519	0050040000022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0-12-31	
520	0050040000023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0-12-31	
521	0050040000024	서버 DELL R710	서버 DELL R710	13,200,000	2010-12-31	
522	0050040000025	IBM X3650	IBM X3650	18,447,000	2010-12-31	
523	0050040000026	IBM X3650	IBM X3650	18,447,000	2010-12-31	
524	0050040000027	IBM X3650	IBM X3650	18,447,000	2010-12-31	
525	0050030110009	SZ-2000DT (LG엔시스)	SZ-2000DT (LG엔시스)	30,000,000	2010-12-31	
526	0050030090001	백본라우터		29,370,000	2009-12-31	
527	0050050000002	UPS(Escort-2500)		1,980,000	2009-12-31	
528	0050030110002	NXG 2000(SECU1)	NXG 2000(SECU1)	19,000,000	2009-12-31	
529	0050080000023	EN-2126JS3H-NQX(PROWQRE)	EN-2126JS3H-NQX PROWQRE)	8,500,000	2009-12-31	
530	0050030000002	Netel 8010(Netel)	Netel 8010(Netel)	29,000,000	2009-12-31	
531	0050110000001	Sensaphone 400(PHONETICS)	Sensaphone 400(PHONETICS)	1,000,000	2009-12-31	
532	0070020000001	네비게이션		224,000	2009-08-07	
533	0070020000002	네비게이션		224,000	2009-08-07	
534	0060070000025	예산회계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예산회계인사관리 소프트웨어	4,500,000	2009-05-28	
535	0080010020003	소니 DSR-PD170		2,255,000	2009-05-21	
536	0080010020004	소니 DSR-PD170		2,255,000	2009-05-21	
537	0080040000003	LIBEC TH-650		371,800	2009-05-21	
538	0080040000004	LIBEC TH-650		371,800	2009-05-21	
539	0080030000002	소니 UMP-C1		371,800	2009-05-21	
540	0080030000003	소니 UMP-C1		371,800	2009-05-21	
541	0080030000004	소니 UMP-C1		371,800	2009-05-21	
542	0080010020005	소니 DSR-PD170		2,255,000	2009-05-21	
543	0080060010001	Matrix LED Light ML-80		780,000	2009-04-03	
544	0050030020003	스위치허브 26Port		990,000	2008-12-26	
545	0050030020004	스위치허브 26Port		990,000	2008-12-26	
546	0050040000014	HP DL360RG5	HP DL360RG5	6,633,000	2008-12-26	
547	0050040000015	Comtrue PrivacyCenter200	Comtrue PrivacyCenter200	19,910,000	2008-12-26	
548	0050080000006	HDS Tagmastore 750GB HDD	DF-F700-ATE750R	1,870,000	2008-12-26	
549	0050080000007	HDS Tagmastore 750GB HDD	DF-F700-ATE750R	1,870,000	2008-12-26	
550	0050080000008	HDS Tagmastore 750GB HDD	DF-F700-ATE750R	1,870,000	2008-12-26	
551	0050080000009	HDS Tagmastore 750GB HDD	DF-F700-ATE750R	1,870,000	2008-12-26	
552	0050080000010	HDS Tagmastore 750GB HDD	DF-F700-ATE750R	1,870,000	2008-12-26	
553	0060070000022	MS Office2007(16식)	MS Office2007(16식)	6,362,400	2008-12-26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554	0060070000023	한글 2007(17식)	한글 2007(17식)	2,954,600	2008-12-26	
555	0080040000005	Manfrotto			2008-01-31	
556	0050080000001	HDS WMS100	Hitachi Data System WMS100	19,943,000	2007-12-31	
557	0050030050002	Sniper WAF S-1000		29,997,000	2007-12-31	
558	0050040000010	웹호스팅서버(DL580)	DL580	14,900,000	2007-12-31	
559	0050040000013	웹호스팅서버(DL580)	DL580	14,900,000	2007-12-31	
560	0050030080002	Castalyst 4500(모듈1식)		4,981,812	2007-12-28	
561	0050090000001	IDC센터 분전함		2,497,000	2007-09-12	
562	0050030080001	Castalyst 4500		23,595,000	2006-12-29	
563	0050030000011	Castalyst 4506	Castalyst 4506	23,595,000	2006-12-29	
564	0080040000001	소니 VCT-1170RM		700,000	2006-12-28	
565	0050060000002	NEO 2000(Over land)	NEO 2000(Over land)	30,000,000	2005-12-31	
566	0050080000022	SN-3163HPWARE)	SN-3163H(PROWARE)	9,000,000	2005-12-31	
567	0050030000001	Application switch 3000(PIOLINK)	Application switch 3000(PIOLINK)	18,000,000	2005-12-31	
568	0050030110001	PRIVACY CENTER 200(COMTRUE)	PRIVACY CENTER 200(COMTRUE)	19,910,000	2005-12-31	
569	0060070000018	회계 S/W(Neoplusact, sal)	Neoplusact, sal	1,750,000	2002-12-31	

□ 물품 취득후 물품관리대장 미등재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사업관리용 PC	데스크탑	2,000,000	2011	
2		사업관리용 PC	데스크탑	2,000,000	2011	
3		사업관리용 PC	데스크탑	2,000,000	2011	
4		개발용 PC	데스크탑	2,000,000	2011	
5		OASIS	OASIS 에이전트	10,000,000	2012	
6		검색엔진	mariner3		2013	
7		OASIS	OASIS 에이전트	5,000,000	2014	
8		지도서비스 엔진 02mapWeb 서버	지도 엔진	42,000,000	2015	
9		Namo Crossedit3.5 1식(무상)	웹 에디터		2015	
10		웹크롤러	DATA COLLECTOR v1.1		2015	
11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v5.0		2015	
12		OASIS	OASIS 에이전트		2015	
13		OASIS	OASIS 에이전트		2015	
14		02Map 3D	3D GIS엔진	50,000,000	2016	
15		OASIS	OASIS 에이전트		2016	
16		알약 3.x	알약 3.x			
17		알뜰즈통합팩	알뜰즈통합팩			
18		GA Subscription 2013	GA Subscription 2013			
19		소프트웨어	SecureGuard AMv6.0, Node License			
20		데스크탑	데스크탑			
21		데스크탑	데스크탑			
22		데스크탑	데스크탑			
23		데스크탑	데스크탑			
24		데스크탑	데스크탑			
25		데스크탑	데스크탑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6		데스크탑	데스크탑			
27		데스크탑	데스크탑			
28		데스크탑	데스크탑			
29		데스크탑	데스크탑			
30		데스크탑	데스크탑			
31		데스크탑	데스크탑			
32		데스크탑	데스크탑			
33		데스크탑	데스크탑			
34		데스크탑	데스크탑			
35		데스크탑	데스크탑			
36		데스크탑	데스크탑			
37		데스크탑	데스크탑			
38		데스크탑	데스크탑			
39		데스크탑	데스크탑			
40		데스크탑	데스크탑			
41		데스크탑	데스크탑			
42		데스크탑	데스크탑			
43		데스크탑	데스크탑			
44		데스크탑	데스크탑			
45		모니터	모니터			
46		모니터	모니터			
47		모니터	모니터			
48		모니터	모니터			
49		모니터	모니터			
50		모니터	모니터			
51		모니터	모니터			
52		모니터	모니터			
53		모니터	모니터			
54		모니터	모니터			
55		모니터	모니터			
56		모니터	모니터			
57		모니터	모니터			
58		모니터	모니터			
59		모니터	모니터			
60		모니터	모니터			
61		모니터	모니터			
62		모니터	모니터			
63		모니터	모니터			
64		모니터	모니터			
65		모니터	모니터			
66		모니터	모니터			
67		모니터	모니터			
68		모니터	모니터			
69		모니터	모니터			
70		모니터	모니터			
71		모니터	모니터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72		모니터	모니터			
73		모니터	모니터			
74		모니터	모니터			
75		모니터	모니터			
76		모니터	모니터			
77		모니터	모니터			
78		책상	책상			
79		책상	책상			
80		책상	책상			
81		책상	책상			
82		책상	책상			
83		책상	책상			
84		책상	책상			
85		책상	책상			
86		책상	책상			
87		책상	책상			
88		책상	책상			
89		책상	책상			
90		책상	책상			
91		책상	책상			
92		책상	책상			
93		책상	책상			
94		책상	책상			
95		책상	책상			
96		책상	책상			
97		책상	책상			
98		책상	책상			
99		책상	책상			
100		책상	책상			
101		책상	책상			
102		책상	책상			
103		책상	책상			
104		책상	책상			
105		책상	책상			
106		책상	책상			
107		책상	책상			
108		책상	책상			
109		책상	책상			
110		책상	책상			
111		책상	책상			
112		책상	책상			
113		책상	책상			
114		책상	책상			
115		책상	책상			
116		책상	책상			
117		책상	책상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18		책상	책상			
119		책상	책상			
120		서랍장	서랍장			
121		서랍장	서랍장			
122		서랍장	서랍장			
123		서랍장	서랍장			
124		서랍장	서랍장			
125		서랍장	서랍장			
126		서랍장	서랍장			
127		서랍장	서랍장			
128		서랍장	서랍장			
129		서랍장	서랍장			
130		서랍장	서랍장			
131		서랍장	서랍장			
132		서랍장	서랍장			
133		서랍장	서랍장			
134		서랍장	서랍장			
135		서랍장	서랍장			
136		서랍장	서랍장			
137		서랍장	서랍장			
138		서랍장	서랍장			
139		서랍장	서랍장			
140		서랍장	서랍장			
141		서랍장	서랍장			
142		서랍장	서랍장			
143		서랍장	서랍장			
144		서랍장	서랍장			
145		서랍장	서랍장			
146		서랍장	서랍장			
147		서랍장	서랍장			
148		서랍장	서랍장			
149		서랍장	서랍장			
150		서랍장	서랍장			
151		서랍장	서랍장			
152		서랍장	서랍장			
153		서랍장	서랍장			
154		서랍장	서랍장			
155		서랍장	서랍장			
156		서랍장	서랍장			
157		서랍장	서랍장			
158		서랍장	서랍장			
159		서랍장	서랍장			
160		서랍장	서랍장			
161		서랍장	서랍장			
162		서랍장	서랍장			
163		서랍장	서랍장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64		캐비닛	캐비닛			
165		캐비닛	캐비닛			
166		캐비닛	캐비닛			
167		캐비닛	캐비닛			
168		캐비닛	캐비닛			
169		캐비닛	캐비닛			
170		캐비닛	캐비닛			
171		캐비닛	캐비닛			
172		캐비닛	캐비닛			
173		캐비닛	캐비닛			
174		캐비닛	캐비닛			
175		캐비닛	캐비닛			
176		캐비닛	캐비닛			
177		캐비닛	캐비닛			
178		캐비닛	캐비닛			
179		캐비닛	캐비닛			
180		캐비닛	캐비닛			
181		캐비닛	캐비닛			
182		캐비닛	캐비닛			
183		캐비닛	캐비닛			
184		캐비닛	캐비닛			
185		캐비닛	캐비닛			
186		캐비닛	캐비닛			
187		캐비닛	캐비닛			
188		캐비닛	캐비닛			
189		캐비닛	캐비닛			
190		캐비닛	캐비닛			
191		캐비닛	캐비닛			
192		캐비닛	캐비닛			
193		캐비닛	캐비닛			
194		캐비닛	캐비닛			
195		캐비닛	캐비닛			
196		캐비닛	캐비닛			
197		캐비닛	캐비닛			
198		캐비닛	캐비닛			
199		캐비닛	캐비닛			
200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1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2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3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4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5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206		책장	책장			
207		책장	책장			
208		책장	책장			
209		책장	책장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10		책장	책장			
211		옷장	옷장			
212		옷장	옷장			
213		쇼케이스	쇼케이스			
214		쇼케이스	쇼케이스			
215		의자	의자			
216		의자	의자			
217		의자	의자			
218		의자	의자			
219		의자	의자			
220		의자	의자			
221		의자	의자			
222		의자	의자			
223		의자	의자			
224		의자	의자			
225		의자	의자			
226		의자	의자			
227		의자	의자			
228		의자	의자			
229		의자	의자			
230		의자	의자			
231		의자	의자			
232		의자	의자			
233		의자	의자			
234		의자	의자			
235		의자	의자			
236		의자	의자			
237		의자	의자			
238		의자	의자			
239		의자	의자			
240		의자	의자			
241		의자	의자			
242		의자	의자			
243		의자	의자			
244		의자	의자			
245		의자	의자			
246		의자	의자			
247		의자	의자			
248		의자	의자			
249		의자	의자			
250		의자	의자			
251		의자	의자			
252		의자	의자			
253		의자	의자			
254		의자	의자			
255		의자	의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256		회의테이블	회의테이블			
257		회의테이블	회의테이블			
258		회의테이블	회의테이블			
259		회의테이블	회의테이블			

□ 문화관광연구원 이관물품 물품관리대장상 누락 등

(단위 : 점)

순위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비고
1	0040010060001	ipad2/A1395 16GB WIFI	ipad2/A1395 16GB WIFI	640,000	2011-05-18	관리대장상 누락된 물품
2	0040010060003	ipad2/A1395 16GB WIFI	ipad2/A1395 16GB WIFI	640,000	2011-05-18	'
3	0040010060004	ipad2/A1395 16GB WIFI	ipad2/A1395 16GB WIFI	639,999	2011-05-18	'
4		소프트웨어 일반	문서변환용sw		2008-02-01	관리대장상 미등록된 물품을 이관
5		소프트웨어 일반	개발응용프로그램			'
6		소프트웨어 일반	개발응용프로그램			'
7		사무가구	티테이블		2014-12-29	'
8		사무가구	티테이블용 의자		2014-12-29	'
9		사무가구	티테이블용 의자		2014-12-29	'
10	0040020010070	LCD모니터	IDC		2013-12-31	문경연 이관문서에는 있으나 미이관된 물품
11	0040010010081	데스크탑	사무실(602호)	877,550	2013-09-16	'
12	0040010010091	데스크탑	사무실(602호)	877,550	2013-09-16	'
13	0040010060002	아이패드	8층(사무실)	640,000	2011-05-18	'
14	0040020010038	LCD모니터	사무실(602호)	300,000	2011-02-28	'
15	0050100020001	DB Server	IDC		2011-02-28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2017. 11. 3. 감사일 현재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등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 1] 과 같이 업무용 차량을 임차(구매)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용차량 임차 및 운영관리 소홀

정보원은 2013. 7. 1.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 부터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을 이관(문체부 저작권산업과-1498, 2013.6.20.) 받은 후, 위 사업 수행을 위해 2014. 2. 24.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예산(차량 리스료 포함)¹⁾을 교부 승인 받았다.

이에 정보원은 지방소재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공공저작물 제도 안내 및 공공누리/신탁 설명회 개최시 직원이동 및 행사물품 운반용으로 2014. 3. 19. 스타렉스 11인승 차량을 [표 1] 과 같이 신규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신규 차량을 임차하고자 할 경우 정보원은 그 목적과 용도, 그 이용

1) 운영비 임차료 차량리스료(업무용 차량 12인승 기준) 12,400천원(1,240천원*10월)

횟수, 기존차량으로 가능 여부,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하지만 진흥원은 스타렉스 11인승은 1종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고 전담 운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²⁾이 어려운 데도, 고가(49백만 원/ 월 1,280,400원)인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을 임차하였다.

[표 1] 스타렉스 차량 임차계약 내역

구분	계약내용
○ 임차계약	스타렉스(G스타렉스 디젤11인승, 2,497cc), ☑☑캐피탈(수익계약), 계약일로부터(2014.3.17.) 36개월(2014.3.19.~2017.3.5.), 월 1,280,400원(VAT포함)
- 소요비용	49,338,080원(차량가격 46,750,000원, 메이커택송료 310,000원, 등록제세금, 부대비용 2,278,080원)
- 임차(리스)조건	취득원가(49,338,080원), 리스기간(36개월), 잔존가치(16,830,000원), 약정운행거리(40,000km), 종료처리방법(반납, 재리스, 인수), 납부리스료(1,280,400원/ 보험료 등 포함)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기존 운영 중에 있는 업무용 차량 2대(SM5, 카니발)의 운행 횟수가 [별표 2]와 같이 각 차량 당 월 평균 2012년 7.8회, 2013년 8.1회로 저조하여 기존 차량으로도 위 사업에 이용이 가능함에도 정보원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공공누리사업 수행을 이유로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한 것은 부적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원은 2014. 3. 19. 스타렉스를 임차(리스) 계약하여 운영하다가, 2016. 4. 15.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유로 해지를 결정하여 매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2015. 2월경 대형차량의 운전이 부담되고 1종 면허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여 [별표 2] 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 운행 횟수가 월 평균 2014년 3.1회로 이용 횟수가 적고, 2014년 대비 2015년 사업 설명회와

2) 신규로 임차(리스)한(2014.3.19.) 스타렉스는 2014. 4. 16.부터(최초 주행거리 675km) 2016. 4. 7.까지 운행 횟수가 총 59회로 월평균 2.36회에 불과함(공공누리사업 등 이용 횟수 25회, 공공누리사업 직원 ktx 등 이용실적 87회), 최초 자동차등록증(주행거리/ 미기재), 정기검사시(2015.4.21.) 자동차등록증(주행거리 5,151km)

방문교육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차량 임차 해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임차 차량을 해지 할 경우 리스계약 기간 중 반납 시 위약금 약 20,639천 원이 발생³⁾하여 예산 처리가 어려워 차량 승계 매각을 검토하였고, 2015. 2. 16. 임차(리스) 매각 공고 수수료를 지급 결의하여 대행업체(☐☐☐☐☐☐☐)에서 차량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상자 없어 2016. 4. 15.에서야 임차(리스) 차량을 승계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한편 정보원은 업무용 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기존 업무용 차량의 운행 실적이 [별표 2] 와 같이 차량운행일지 상 해당 월평균 2012년(2대) 7.8회, 2013년(2대) 8.1회, 2014년(3대) 5.1회로 운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2015. 5. 20. 원장 전용으로 그랜저 차량을 신규로 임차(리스)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정보원은 2017. 10월 현재 [표 2] 와 같이 업무용 차량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 횟수가 해당 월평균 2016년 4.5회, 2017년 3.9회로 이용 횟수가 적어 차량 대수⁵⁾가 과다하여 차량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업무용 차량 운영 현황(총 4대/ 2017.10월 현재)

차량명	차량명	구매 목적	구매시기	월 사용료	비고
SM5	스타렉스	문화정보사업 진행 및 직원의 업무용	2007년 리스(3년) 2010년 법인명의 이전	-	법인소유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관장 및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용	2015년 리스(3년)	953,632원	리스
카니발 1	카니발 1	문화PD사업 및 촬영 업무용	2016년 렌트(3년)	951,333원	렌트
카니발 2	카니발 2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업무용	2016년 렌트(3년)	800,800원	렌트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캐피탈 중도반환 정산서(2015.2.2. 기준)

4) 그랜저는 2015. 5. 21.부터 2015. 12. 31. 까지 원장 전용으로 운영(총 47회로 월 평균 5,875회)하다 2016. 1. 1.부터 원장 및 직원 업무용 차량으로 운영함

5) 차량 운영 현황 : 2012년~2013년(2대), 2014년(3대), 2015년~2017년 현재(4대)

2. 업무용 차량 임차 수의계약 부적정

정보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용 차량 4대를 [표 3] 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였다.

[표 3]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 내역

순번	차량명	차량번호	리스(렌탈) 일자	월비용	계약기간	총금액	계약 방법	계약 업체명 (견적 참여업체)
1	스타렉스	70루7589	2014.3.19	1,278,500원	36개월	46,026,000원	수의	☑☑☑캐피탈/ 1,280,400원 (☑☑☑캐피탈/ 1,378,600원)
2	그랜저 하이브리드	40보6208	2015.5.20	953,632원	36개월	34,330,752원	수의	☑☑☑캐피탈/ 953,632원 (☑☑☑캐피탈/ 961,500원)
3	카니발 1	69하9319	2016.4.15	951,333원	36개월	34,247,988원	수의	☑☑☑캐피탈/ 951,837원 (☑☑☑캐피탈/ 1,107,040원, ☑☑☑캐피탈/ 1,007,200원)
4	카니발 2	69하9799	2016.6.20	800,800원	36개월	28,828,800원	수의	☑☑☑카드/ 801,130원 (☑☑☑캐피탈/ 820,718원, ☑☑☑캐피탈/ 874,830원)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 4대 각각의 임차 비용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정보원은 특정 2~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정보원은 보유 차량 이용실적이 저조함에도 불필요한 차량을 추가로 임차(스타렉스/그랜저)하는 등 예산낭비를 하였고, 차량 임차계약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전자견적 입찰 미적용)으로 체결하여 관련규정을 위배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 ① 불필요한 차량을 임차 하는 등 예산낭비 및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경고 조치’하시고,(개인주의)
- ② 또한 현재 업무용 차량 4대의 운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차량 축소 등 차량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업무용 차량 구매 및 임차(리스, 렌트) 계약 내역

일자	구분	차량명	차량번호	금액	계약기간	목적
2007.1.18.	리스	SM5		월 596,100원	2007.1.18.~2010.1.18.	문화정보사업 진행 및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
2009.6.8.	구매	카니발 (2001년식)		6,600,000원	-	문화PD 영상 촬영 및 제작
2010.1.18.	명의 이전	SM5		-	-	문화정보사업 진행 및 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
2013.2.26.	매각	카니발 (2001년식)		1,500,000원	-	문화PD 영상 촬영 및 제작
2013.2.22.	리스	카니발		월 919,800원	2013.2.22.~2016.2.22.	문화PD 영상 촬영 및 제작
2014.3.19.	리스	스타렉스		월 1,278,500원	2014.3.19.~2017.3.5.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업무용
2015.5.20.	리스	그랜저 하이드리브		월 953,632원	2015.5.20.~2018.5.20.	기관장 및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효율 개선
2016.2.22.	리스 해지	카니발		-	2013.2.22.~2016.2.22.	문화PD 영상 촬영 및 제작
2016.4.14.	리스 승계 매각	스타렉스		3,500,000원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업무용
2016.4.15.	장기 렌트	카니발		월 951,333원	2016.4.15.~2019.4.14.	문화PD사업 및 업무 효율 개선
2016.6.20.	장기 렌트	카니발		월 800,800원	2016.6.20.~2019.6.19.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업무용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연도별 업무용 차량 운행 실적(차량운행 관리대장 상)

연도별	월평균 운행횟수(회)							대당평균 운행횟수
	카니발 (07나9026)	SM5 (52나8379)	카니발 (23다2386)	스타렉스 (70루7589)	그랜저 (40보6208)	카니발 (69하9319)	카니발 (69하9799)	
2012년	7.2	8.4	-	-	-	-	-	7.8
2013년	-	10.6	5.1	-	-	-	-	8.1
2014년	-	6.8	5.0	3.1	-	-	-	5.1
2015년	-	7.1	3.9	1.6	5.9	-	-	4.5
2016년	-	5.3	2.0	3.0	3.9	6.2	3.7	4.5
2017년	-	3.3	-	-	3.5	4.8	3.8	3.9 (6.30.기준)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홀
소 관 실 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 계 기 관	한국문화정보원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사무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등 총 378종을 구입(2017.9.4. 기준)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¹⁾, 제6조 제1항²⁾ 및 정보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2015.6.9.)」 제7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제8조(점검)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시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할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 라이선스 형태 표시, 실제로 설치하여 이용 중인 수량, 라이선스 만료 날짜,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이용자 및 설치일자 등을 설치 현황표에 작성

1) 기관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의 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원은 아래 [표] 와 같이 소프트웨어 총 378종³⁾ 중 사무실 등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192종은 관리대장을 작성(설치 현황표 미작성)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186종은 관리대장, 설치 현황표를 작성하지 않고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유 현황

(단위 : 종(카피))

구분	구입 수량	보유 수량	미 보유 수량
계	378(1,018)	353(987)	25(31)
사무실 업무용 PC	192(513)	182(503)	10(10)
정보화사업	186(505)	171(484)	15(21)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이번 감사기간 중 [별표] 와 같이 업무용 PC 등의 소프트웨어 25종⁴⁾은 백신 소프트웨어 변경(2014.7. Alyac)시 폐기된 V3 1종과 2002년, 2006년에 도입되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24종은 사용하기 부적합 또는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로 확인되었으나,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정보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및 실태점검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정보원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는 총 378종으로 사무실 등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192종,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186종이며, 총 378종 중 보유 338종, 미보유 25종, 취득후 미등재 15종으로 확인됨

4) 32bit OS 운영체제에서 64bit OS 운영체제로 발전됨에 따라 기존 2002년~2006년 구입 한 운영체제는 호환성과 보안성의 문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부적합 또는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임

<별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유 상세내역

1. 사무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단위 : 종)

연번	종류	구입	보유	미보유	미보유 사유
1	한글 2007	1	1	-	
2	windows7	3	3	-	
3	MS-Office2007	1	1	-	
4	한글2010	74	74	-	
5	MS-Office2010	58	58	-	
6	MS-Office2013	14	14	-	
7	Adobe CS5	18	18	-	
8	Adobe CS6	3	3	-	
9	Navigator Edition r9.6	1	1	-	
10	MS-Project 2013	1	1	-	
11	한글2014	5	5	-	
12	Adobe Production Primum 4.0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9.05.27.
13	Windows Xp Pro(DSP)외 7종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3.10.10.
14	ACDSee 4.0K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2.12.31.
15	한글+PDF 5.0	1	-	1	"
16	H Visio std 2002	1	-	1	"
17	Norton Ghost 2002	1	-	1	"
18	한글97	1	-	1	"
19	나모3.0	1	-	1	"
20	포토샵5.0	1	-	1	"
21	MS 오피스 2000	1	-	1	"
22	알약 3.0	1	1	-	
23	알툴즈통합팩	1	1	-	
24	GA subscriptipn 2013	1	1	-	
계		192	182	10	

2.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단위 : 종)

연번	종류	구입	보유	미보유	미보유 사유
1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2	5	5	-	
2	WatchAll 10 DBMS Agent Class1	3	3	-	
3	WatchAll 10 DBMS Agent Class3	9	9	-	
4	WatchAll Facility Manager	1	1	-	
5	WatchAll 10 SMS Agent for Windows Class1	2	2	-	
6	WatchAll 10 SMS Agent for Linux Class1	1	1	-	
7	WatchAll 10 Framework	1	1	-	
8	WatchAll 10 SMS Agent for Unix Class1	1	1	-	
9	WatchAll 10 Network Agent Class3	1	1	-	
10	WebFilter W2000 2.0	1	1	-	
11	WebFilter W3000 2.0	1	1	-	
12	ServerFilter v1.0	1	1	-	
13	APPM for Password v1.4, APPM 1000	1	1	-	
14	APPM for Password v1.4, APPM Agent	64	64	-	
15	SecureGuard AM v6.0, 2000 Server	1	1	-	
16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21	21	-	
17	윤소호2012통합본	1	1	-	
18	Mariner4/Drama	1	1	-	
19	Wirecast 6 for Mac 라이선스	1	1	-	
20	i-spoder 4	2	2	-	
21	DQCAT	1	1	-	
22	OASIS 에이전트	9	9	-	
23	VMware vSpjere 5 Enterprise	1	1	-	
24	VMware Advanced	4	4	-	
25	VMware vShield Edge 25 VM Pack	1	1	-	
26	더존 I CUBE-G20	1	1	-	
27	NEO BIZBOX	2	2	-	
28	전자결재 라이선스	14	14	-	
29	관리프로그램	1	1	-	
30	예산회계인사관리 소프트웨어	1	1	-	
31	Neoplusact ,sal	1	1	-	
32	동영상변환솔루션	1	1	-	
33	Repia Search Server /S1010 v3.5	1	1	-	

연번	종류	구입	보유	미보유	미보유 사유
34	KISS-OASIS 1.0	1	1	-	
35	Compressor 4, Motion 5	1	1	-	
36	DEXTUpload Pro Ver 3.5.6.0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13.02.25.
37	에이전트라이센스	2	-	2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12.12.31
38	통합모니터링솔루션 및 운영시스템	1	-	1	미폐기 / 신규SW 도입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12.09.14.
39	MS Visual C++ 6.0 Ent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2.12.24
40	한글 Netscape Server	1	-	1	"
41	V-S 97 for internet:NT	4	-	4	"
42	V3 Pro 2004 Package	1	-	1	미폐기 / 신규SW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 만료 취득일자 : 2004.03.22
43	한글 SQL sever 7.0	2	-	2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2.12.24
44	UniSQL for Unix(Engine 4.0)	1	-	1	"
45	Loginside TM eBIZ Education	1	-	1	미폐기 / 버전 노후화에 따른 사용 불가 취득일자 : 2006.12.29
46	OASIS 에이전트	5	5	-	
47	mariner3	1	1	-	
48	O2mapWeb	2	2	-	
49	Namo Crossedit3.5	1	1	-	
50	Data Collector v1.1	1	1	-	
51	Search formula1	1	1	-	
52	SecureGuard AM v6.0, Node License	1	1	-	
계		186	171	15	

※ 위 미폐기 소프트웨어는 32bit OS 운영체제에서 64bit OS 운영체제로 발전됨에 따라 기존 2002년~2006년 구입한 운영체제는 호환성과 보안성의 문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부적합 또는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임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제출자료 재구성